

# 농업법인 업무편람

2008. 11

농림수산식품부  
경 영 인 력 과

# = 목 차 =

I.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	1
1. 제도도입 배경 및 필요성 .....	3
2. 농업법인제도의 변천과정 .....	4
3.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특징 .....	7
4. 농업법인의 세제 지원 내용 .....	9
II. 농업법인 설립절차 .....	15
1. 정관의 작성 .....	17
2. 창립총회 .....	18
3. 출자 .....	19
4. 설립등기 .....	20
〈 기타 농업법인 참고자료 〉 .....	23
1. 농업법인 정관례 .....	25
2. 관련 법령 .....	67
3. 농업법인 해산절차 .....	76
4. 농업법인 관련 질의·응답사례 .....	79
5. 창립총회 의사록, 등기신청서 작성례 .....	85
6. 2006년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 .....	9

# I.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1. 제도도입 배경 및 필요성
2. 농업법인제도의 변천과정
3.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특징
4. 농업법인의 세제 지원 내용

# 1. 제도도입 배경 및 필요성

## 가. 제도 발족

-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의 육성방침을 정하고,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 동년 11월에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농업법인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나. 농업법인 육성 필요성

- 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규모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소규모로는 실현 불가능한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의 실현
- 복합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농기업적 자력성장 유도
  - 참여 농가의 농업노동력 분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기회부여
- 지역농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지속성 있는 경영체 유지존속
  - 조합원 중심 조직 경영체를 통한 신규사원 영입으로 경영의 지속성 유지
  - ※ 가족농은 후계자 단절시 지속적 농업경영 곤란

## 2. 농업법인제도의 변천과정

### 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 소농 중심의 협업경영 유도

#### □ 농업법인제도의 성립배경

- 1970년대 이후 농협의 내부조직으로 육성된 작목반, 1980년대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육성되어 온 기계화영농단을 모태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산조직이 형성되고 협업경영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나타남
- 대외적으로는 UR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력 및 경영체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됨.
-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정부는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경쟁력을 갖춘 소수 정예농가를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한편,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법인경영체의 육성을 표방하고 1990년에 이를 입법화하면서 농업법인제도가 성립

#### □ 설립당시 제도의 특징

- 영농조합법인은 소규모 영세농 중심의 협업 경영체, 위탁영농회사(농업회사법인)는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체로 성격을 규정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법인으로서 협업을 바탕으로 영농규모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설립
  - 농가조건(3년이상 농업종사), 규모조건(1ha미만), 거주 조건(법인 소재지의 거주자로 제한), 출자조건(농지출자 의무화)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
  - 사업의 내용도 농업 생산에 국한

- 위탁영농회사는 농작업 수탁조직을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체로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
  - 사업내용도 위탁영농 및 농작업 대행으로 제한하고,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등 농업경영에 참여를 금지

## 나. 1994년 농발법 개정 : 근대적 조직경영체제 확립

### □ 제도 개정의 배경

-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품목별 규모화·전문화가 필요하며, 개별 경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경영체를 중점 육성한다는 “신농정계획”의 수립에서 비롯
- 1993년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계획”에서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체로 규정하고,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기능까지를 포함한 생산자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
- 위탁영농회사는 영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체에서 쌀농업의 전문경영체로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비농업인의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짐

### □ 제도변경의 내용

-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영역을 당초의 농업생산에서 가공·유통으로 확대
- 영농규모 제한, 거주지 요건, 출자요건을 폐지하여 법인의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
- 비농업인의 자본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
-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인의 성격을 애그리비지니스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기업경영체로 규정
- 비농업인의 자본참여를 확대하고,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농지 소유를 허용

## 다.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 부실 법인 정비와 농외 자본의 적극 유치

### □ 제도 개정의 배경

- 1994년 이후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수혜 목적으로 법인설립이 과열되고 경영 부실로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1997년에는 정책지원 사업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 법인 정비대책을 강구
- 정상 운영 중인 법인의 경우도 출자가 부진하여 운영자금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 참여자의 출자 증액을 유도하고, 농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비농업인의 참여조건을 개선

### □ 제도변경 내용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한도액 규정을 폐지하고, 농업회사법인중 주식회사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한도액을 완화(1/3→1/2)
- 부실법인 정비대책의 일환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 법인과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의 경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해산청구제를 도입

## 라. 2000년 이후 제도 변경 내용

- 농업회사법인중 주식회사의 농지소유 허용(농지법, '02.12.18)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액을 완화(총출자의 1/2→3/4)

### 3.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특징

#### 가. 근거법령

-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서 영농조합법인(제28조)과 농업회사법인(제29조)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나. 법인 성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 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 설립 주체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1~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사업 범위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 ※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사원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농지법 제2조3호)

## 마.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

## 4. 농업법인의 세제 지원 내용

###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p>◇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p> <p>◇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p> <p>(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p>	<p>◇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p> <p>◇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감면</p> <p>(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p> <p>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p>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p>각종 감면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0%)까지만 가능함.</p> <p>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로 인하함. 다만,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금액은 기존과 같이 15% 적용(2005개시사업년도분 적용)</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 작물재배업, 축산업, 종자및묘목생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게 되었음)</p>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p>◇ 출자조합원이 각 지분별로 배분 받거나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p> <p><b>&lt;지방세법 부칙&gt;(2005.1.5)</b></p> <p>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따라서 2004년도 농업소득세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음.</p>	<p>◇ 농업회사법인이 납세의무가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 80백만원 초과시 주민세포함 44%세율 적용되어 세부담이 과도함.</p> <p>다만, 현재 농업소득세가 과세중단되어 2008년도 과세분까지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음.</p>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p>◇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세면제</p> <p>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p> <p>(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p> <p>(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u>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u></p> <p>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p>	<p>좌 동</p> <p>(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p>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p>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p> <p>(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p>	<p>좌 동</p> <p>(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p>
배당소득세 면제	<p>◇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p> <p>◇ 기타농업외소득</p> <p>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p> <p>(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p>	<p>◇ 좌 동</p> <p>◇ 기타농업외소득</p> <p>14% 분리과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p>

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106 조제1항3호)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좌 동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 법 제105조의 2, 농·축산· 임·어업용기 자재 및 석유 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 한 특례규정 별표5)	◇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대상품목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연초건조용 차광망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2006.2.9 신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2006.2.9 신설) 12. 동력파종기(2006.2.9 신설) 13. 농업용양수기(2006.2.9 신설) 14. 볍씨발아기(2006.2.9 신설)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2006.2.9 신설) 17.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2007.2.28신설) 18. 화훼용 종자류(2007.2.28 신설)	좌 동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p>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p> <p>(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환급은 농업인이 직접 받아야 함.</p>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5호)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신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좌 동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p>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p>	<p>◇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 경감하고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p> <p>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p> <p>(주)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가 비과세됨.</p>	<p>좌 동</p>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등록세 면제 (266조제7항)	<p>◇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면제</p> <p>* 2005년 1월1일 이후 창업 취득하는 농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됨</p>	<p>좌 동</p> <p>(주)가공, 유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50%만 적용.</p>
설립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p>◇ 법인의 설립등기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 면제</p> <p><b>(주)유상증자시에는 면제되지 않음</b></p>	<p>좌 동</p>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p>◇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가 농업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좌 동</p>
사업소세 면제	<p>◇ 사업소세가 면제에서 과세로 2001년부터 전환됨. 다만,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67조제2항)</p> <p>따라서 유리하우스의 경우에는 사업소세면제가 계속 유효함.</p>	<p>좌 동</p>

## Ⅱ. 농업법인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2. 창립총회

3. 출자

4. 설립등기



# 1. 정관의 작성

## 가.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받기인 공동으로 작성 (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한다.

## 나. 정관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 23조)
  - ①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 ② 목 적
  - ③ 사 업
  - ④ 사무소의 소재지
  -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 2. 창립총회

### 가.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 등

### 나.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① 정관의 승인
-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 구성)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 ④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 다.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 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시 첨부(공증인법 제66조의2)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예) : [참고자료 5]

## 3. 출자

### 가.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 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4. 설립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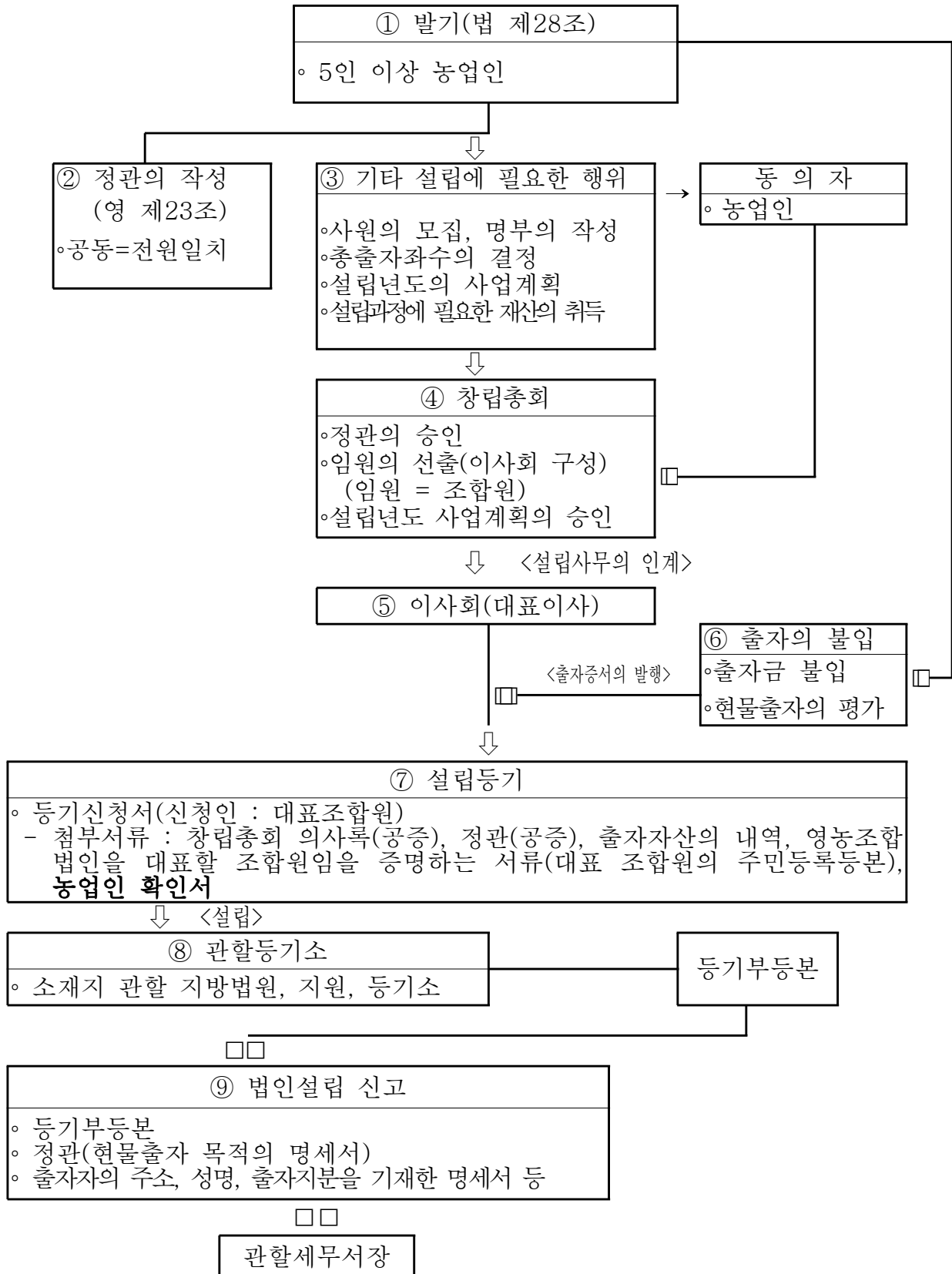
### 가.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 ① 명칭
  - ② 목적
  - ③ 사업
  - ④ 사무소의 소재지
  -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⑦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 ⑧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 기타 등기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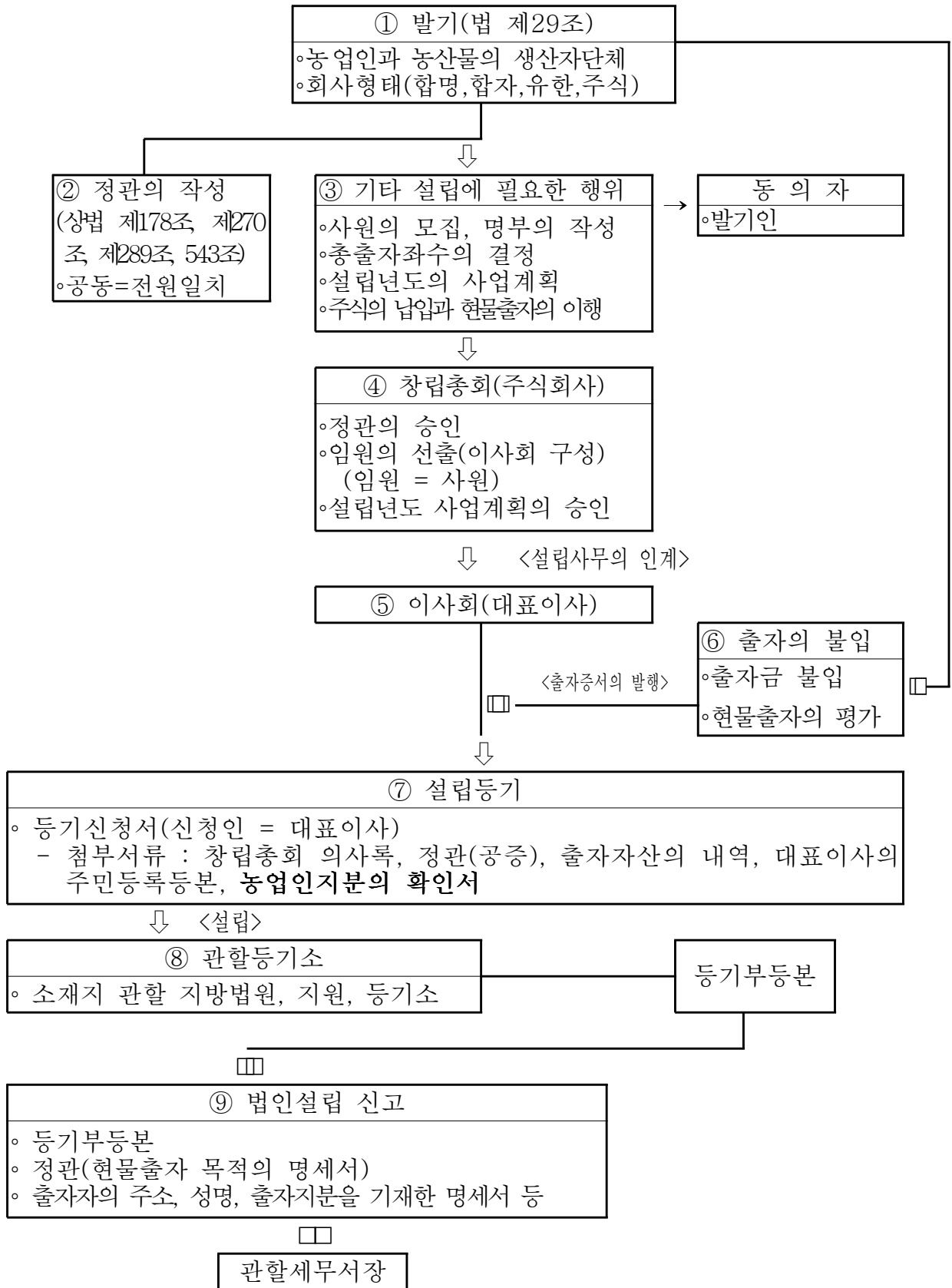
### 나.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7조제2항)

- ① 창립총회의사록
- ② 정관
- ③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 ④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시장·군수가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 □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 □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 기타 농업법인 참고자료

1. 농업법인 정관례
2. 관련 법령
3. 농업법인 해산절차
4. 농업법인 관련 질의·응답사례
5. 창립총회 의사록, 등기신청서 작성례
6. 2006년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

# 1. 농업법인 정관례

## 1.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비고 )

명칭 중에는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고 )

조합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군) ○○(구·읍·면) ○○(동·리)에 둔다.

( 비고 )

별도의 (분)사무소를 두는 조합법인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을 「본 조합법인의 주된 (주)사무소는」으로 고치고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 조합법인의 분사무소는 ○○(시·군) ○○(구·읍·면) ○○(동·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3.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5. 농작업의 대행
6.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7.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1. 각 사업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농업의 경영 : 조합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과정을 포함함.
- 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조합법인의 농업경영에 부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외의 자의 농작업을 협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다.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합법인이 공동경영을 위하여 농사·창고·축사·퇴비사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라.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 조합법인이 농기계·농기구·건조시설 등을 보유하여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대여·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및 임대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마. 농작업의 대행 : 조합법인이 조합원이외의 자로부터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바.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조합법인의 조합원(혹은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함.

2.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한 사업이외의 사업도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은 적절히 열거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을 명기할 수 있다.

예) 6. 관광농업, 자가생산물 인터넷 판매 등

**제5조(협동조합에의 가입)** 본 조합법인은 ○협동조합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다.

( 비고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2 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2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

②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한다.

( 비 고 )

1.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조합법인의 실정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2.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20세 이상으로 하되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 조합법인이 출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만을 기재한다.
4. 제2항의 협동조합, 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산물 생산자 단체임.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본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본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 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 비 고 )

준조합원의 자격은 제1호 내지 제4호 중에서 조합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제10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제3호 및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족관계
3.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4. 경영규모(경지면적,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일 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된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 ② 제1항 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12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 ② 본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의무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와 같으며 제4호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 비고 )

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의무사항을 적절히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년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 된다.

1. 제8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고 )

제명의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제4호부터 추가하여 열거한다.

### 제 3 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제15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농기계·현금·기타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농지·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③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은 ○○좌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좌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그 평가액과 농지출자 좌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⑥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 비고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합법인은 제1항중 「기타의 현물」을 가축(축종명시), 초지, 축산, 축산기계 등으로 적절히 규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조합법인도 □□기타의 현물□□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고 )

출자증서의 발행은 출자지분의 상속공제 등 세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출자재산 특히 토지의 경우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 출자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년도말에 증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비고 )

법정적립금으로 출자총액의 2배를 적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때까지」를 「출자총액의 2배에 달할때까지」로 수정한다.

**제19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년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비고 )

○○은 10이상 50이내에서 정한다.

**제20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 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1조(적립금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2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고 )

제2호의 사업준비금 배분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마다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23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합의 지분취득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② 제3자에게 담보제공 및 정책자금 대출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②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년도말에 한다.

**제27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년도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년도중에 환불하고, 회계년도말에 정산한다.

## 제 4 장 회 계

**제28조(회계년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비고 )

조합법인의 사업성격에 따라 「매년 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31일에 종료한다」로 정하는 등 회계년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9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 비고 )

제1호의 경우 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 비고 )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의 정기적 게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를 「매월」 「분기마다」 등으로 정한다.

**제3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비고 )

조합법인의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자가 부수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법인이 농작업을 수탁하여 대행한 경우와 농기계 및 시설의 공공이용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제32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년도말 결산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수익배분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5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매회계년도의 이익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 비교 )

제2항의 배당을 달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전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6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이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 제 5 장 임 원

**제37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인
3. 감사 ○인
4. 총무 ○인
5. 부장 ○인

( 비교 )

1. 조합법인의 조합원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정수를 정한다.
2. 제5호의 부장은 조합법인의 사업에 따라 영농부장, 축산부장, 구매부장, 판매부장, 가공부장 등으로 명기한다.

**제3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및 총무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40조(이사회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 비고 )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42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년도마다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장은 조합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 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 비고 )

제 5항의 경우 각부의 업무관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책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 비교 )

제4항의 경우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비교 )

임원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감사와 감사이외의 임원 임기는 다르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6 장 회의의 운영

**제48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년도마다 1회 ○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때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중 임원의 해임

( 비고 )

조합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열거한다.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종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③ 제1항의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52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54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6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 제 7 장 해 산

**제55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의 해산 및 합병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비 고 )

조합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

**제56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

( 비 고 )

조합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재산의 처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과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부 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평가액과 농지출자좌수

(제15조 제5항 관련)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출자대상 품 목	출자부동산 표시			평가액	출자좌수
				지 번	지 목	면 적		
조 합 원								
	소 계							
준 조 합 원								
	소 계							
합 계								



## 2-1. 농업회사법인 합병회사 정관례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병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1. 본 회사의 본점은 ○○ 시·도 ○○시·군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으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7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대 ○○○○m<sup>2</sup>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사무실

건평 1층 ○○m<sup>2</sup>

2층 ○○m<sup>2</sup>

가격 금 ○○○○○○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채권 금 ○○○○○○원 단,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

금 가격 금 ○○○○○○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신용

평가표준 1년 금 ○○○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9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겸업금지)**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사원 ○○○을(를) 업무집행 사원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사원 ○○○과(와) 사원○○○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사원 ○○○, 사원 ○○○을(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사원 ○○○을(를)대표사원으로 한다.

**제13조(선임과 임기)** ① 대표사원은 반드시 농업인중에서, 업무집행사원은 그 과반수를 농업인중에서 선임하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써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 망
3. 파 산
4. 금치산
5. 제 명

**제20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유례] ①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겸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거나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받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 제5장 계 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4조(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연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 제6장 해 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만 ○○년간으로 한다.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장 청 산

**제30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 부 칙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사원   ○   ○   ○   □□

(이하 사원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 2-2.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및 비농업인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7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원의 성명·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책임과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대 ○○○○m<sup>2</sup>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貳층 사무실  
 건평 1층 ○○m<sup>2</sup>  
 2층 ○○m<sup>2</sup>  
 가격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채권 금 ○○○○○원 단,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금  
 가격 금 ○○○○○원  
 유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신용  
 평가표준 1년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제9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한책임사원의 겸업의 자유)**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11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을(를) 업무 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와) 동 ○○○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 동 ○○○을(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동 ○○○을(를) 대표사원으로 한다.

**제13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5. 제명

**제20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유례] ①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겸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 제5장 계 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4조(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년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 제6장 해 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 소정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장 청 산

**제30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 부 칙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   ○   □□

(이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 2-3.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자본의 총액)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만원으로 한다.

제7조(준립기간) 본 회사의 준립기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 제2장 사원과 출자

**제8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 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9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000000원으로 한다.

**제11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좌수는 다음과 같다.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유례]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말미 기재와 같다.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제12조(지분의 양도제한)** ①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전항과 관련 비농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본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5일전까지 회의일자와 회의 목적·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5조(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6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7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장 임 원

제18조(임원) 본 회사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중 2인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제19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0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대표이사)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 단,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되 농업인으로 한다.

제22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3조(지배인의 임면) ①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 제5장 계 산

제24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5조(이익배당) 본 회사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26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장 해 산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 병
5. 파 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29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 제4장 부 칙

제30조(재산인수) 회사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계산,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2. 재 산 ○○○○○○
3. 가 격 금○○○원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제31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목적 및 재산 ○○○○○○

3. 출자자산의 가격 금○○○원

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좌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제32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부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사원    ○    ○    ○    □□  
(이하 사원전원이 기명날인)

## 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 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 시·도 ○○ 시·군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7조(준립기간) 본 회사의 준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유례] 본회사는 ○○특허권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 제2장 주식과 주권

제8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만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

[유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주로서 그중 보통주식은 6만주, 우선주식은 2만주, 후배주식은 2만주로 한다.

제○조(우선주식의 내용) 우선주식의 이익배당률은 연 1할로서 당해결산기의 이익배당률이 그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결산기에 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제○조(후배주식의 내용) 후배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연○분의 이액배당을 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조(의결권 없는 주식)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조(상환주식) 상환주식은 주식발행후 ○년 이내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상환가액은 1주당 금○○원으로 한다.

제9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제10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만주로 한다.

제12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제13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예]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로 한 때

제○조 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 **제14조(주식의 양도제한)**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전항과 관련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제16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1월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분할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21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을 과반수로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3조(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

**제24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과반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25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에서 결의로 이사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대표이사는 농업인 1인으로 한다.

**제26조(임기)**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보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법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어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지배인의 임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제31조(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중에는 제19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6장 계 산

**제34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월○일부터 ○월○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35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 제7장 해 산

**제36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7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주주총회의 결의

**제37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8조(회사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9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40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장 청 산

**제41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42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 제9장 부 칙

[유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제○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자

발기인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재산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대 ○○m<sup>2</sup>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3층 사무소

1층 ○○m<sup>2</sup>

2층 ○○m<sup>2</sup>

3층 ○○m<sup>2</sup>

3. 출자재산의 평가액 : 금○○○원

4. 이에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제44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6조(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제1기 영업년도는 본 회사 설립일로부터 서기 년월일까지로 한다.

제47조(최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본 회사의 최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취임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년	월	일
발기인 ○	○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발기인 ○	○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발기인 ○	○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발기인 전원 연기명 날인한다.)

## 2. 관련 법령

### 1) 농업·농촌기본법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業"이라 함은 農作物生産業, 畜産業, 林業 및 이들과 관련된 産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3. "農業經營體"라 함은 農業人,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4. "生産者團體"라 함은 農業生産力의 增進과 農業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農業人의 自主的인 組織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5. "農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6. "農産物"이라 함은 農業活動에 의하여 生産되는 農作物·畜産物·林産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産物을 말한다

**第15條 (營農組合法人の 육성)** ①協業的 農業經營을 통하여 生産性を 높이고 農産物의 出荷·加工·輸出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農業人은 5人 이상을 組合員으로 하여 營農組合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營農組合法人は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營農組合法人は 農業人和 農産物의 生産者團體중 定款이 정하는 者를 그 組合員으로 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農組合法人에 出資하고 議決權이 없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④營農組合法人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의 組合員 또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⑤商法 第176條의 規定은 營農組合法人の 解散命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管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法院에 營農組合法人の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⑥營農組合法人の 設立·出資·사업·定款記載事項 및 解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⑦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 第16條 (農業會社法人의 육성)** ①企業的으로 農業을 경영하거나 農産物의 流通·加工·販賣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農業人의 農作業을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 ②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로 하되, 農業人이 아닌 者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범위안에서 農業會社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 ③第15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④農業會社法人의 設立·出資 및 附帶事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⑤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4, 2003.4.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삭제 <2000.3.24>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5. 삭제 <2000.3.24>
6.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8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이전 및 변경등기)** ①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7>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제11조 (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협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2조 (조합원의 출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 (정관기재사항)** ①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4.7>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②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해산등기 등)** ①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관할등기소)** ①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9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20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4.24>

**제21조 (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제22조 (정관례의 작성)**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 기타생산자단체의 범위(농림부고시 제2002-36호, 2002.7.16)

#### 기타생산자단체의 범위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5.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표 4]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공통지원요건<개정 2005.12>

####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12>

#### 나.다. <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마.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 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 <신설 2006.12>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 자. 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 단, 사업시행지침상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음<개정 2007. 12>

####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

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개정 2005.12>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12>

마. <삭제 2005.12>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 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 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12>

### 3. 농업법인 해산절차

#### <영농조합법인>

□ 관련법령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5조, 민법 제720조 ~ 제724조

◦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파산 또는 합병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이 5인 미만인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 해산절차

정관에 정한대로 청산의결(총회에서 해산을 의결) → 청산인 선정 → 해산등기(청산인) → 채권신고의 최고(청산인)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해산완료

#### <농업회사법인>

□ 합명회사의 해산 관련법령 : 상법 제227조 ~ 제267조

◦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해산절차

해산등기(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청산인 선임 → 청산인의 등기 → 채무변제등
- 청산종결의 등기

□ **합자회사**의 해산 관련법령 : 상법 제285조 ~ 제287조

◦ 해산사유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

◦ 해산절차

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

□ **주식회사**의 해산 관련법령 : 상법 제517조 ~ 제542조

◦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정관을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주주총회의 의결

◦ 해산절차

해산의결 → 주주에게 해산의 통지 → 해산등기 → 청산인 결정  
→ 청산인 신고(법원) → 청산의 종결

□ 유한회사의 해산 관련법령 : 상법 제609조 ~ 제613조

◦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정관을 정한 사유의 발생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사원총회의 의결

◦ 해산절차

해산등기 → 청산인 결정 → 청산인 신고(법원) → 청산의 종결

## 4. 농업법인 관련 질의·응답사례

### <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 및 설립절차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기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인”이란 아래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농협,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인이 5인이상이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법인을 의미함.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 → 법인설립 신고(세무서) 입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출자 모두 가능하며 1인의 출자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 및 설립절차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되며 설립등기 신청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가 승인한 법인정관 및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조합원 및 사원명부, 출자좌수결정, 이사회 구성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은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있어야 하고,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에 따라 5천만원 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3/4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이 5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 생산자단체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 계획 수립 등) →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 → 법인설립 신고(세무서)입니다.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대표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2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4>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이며,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로서 농업·농촌기본법상 설립요건(농업인 구성요건, 준용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고 청산등기를 한 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거쳐 새롭게 설립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농업법인에 외국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나 출자에 대한 기본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산자부 고시)이며 동 관련규정에는 외국인투자 대상 제외업종과 투자제한업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벼, 보리재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육우사육업 및 육우도매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50%미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위 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한 이외에, 농업법인의 근거법률인 농업·농촌기본법과 그 시행령에는 외국인의 준조합원으로서의 참여 또는 출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의 발전 도모라는 동 법의 목적과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농업법인의 설립 지에 비추어 볼때 외국인의 참여나 출자는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단체에 해당되고 정관상 문제가 없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으며 동조항 6호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은 “기타 생산자단체의 범위”(농림부고시 2002-36호)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생산자단체의 범위 >**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 조합연합회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5.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7>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또는 건설업 등을 할 수 있는지?**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설립 근거법인 농업농촌기본법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출자를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여부?**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및 그 제1호와 제3호에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제16조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 등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농지 등)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9> 농업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인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표자도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가 가능하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총 출자액의 4분의3)를 넘지 않아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 <10>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출자금 양도가 가능한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지분을 양수받을 양수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정관례(농림부 고시2004-43)에 따르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25조)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에 준하여 조합원간 협의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 조합의 정관에서 지분의 양·수도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만약 규정한 바가 없다면, 총회를 통해 동 사안을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 5. 창립총회 의사록, 등기신청서 작성례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례>

#### 창립총회의사록

년 월 일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창립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 ○○○. ○○○.○○○.○○○.○○○. ( 명)

출석발기인 : 정원

발기인 대표 ○○○ 는 위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발기인 전원은 전원 일치의 합의로 발기인 ○○○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다.

####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림부에서 고시한 정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전원일치의 합의로 승인하다.

#### 제2호 의안 임원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에 정하여진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방법을 물은 바 전원 일치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기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음

대표이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감 사 ○ ○ ○  
총 무 ○ ○ ○  
○○부장 ○ ○ ○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락하다.

### 제3호 의안 제1회 출자납입의 건

의장은 본 ○○법인 설립당시의 제1회 출자납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별첨 출자자산 내역표와 같이 납입키로 전원일치 합의로 의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동일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와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 3통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하다.

년 월 일

○○법인

의장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함)

## <등기신청서 작성례>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서

1. 명 칭 : ○○영농조합법인(주1)
2. 사 무 소 : ○○도 ○○군 ○○면 ○○리 ○○번지
3. 등기의 목적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4. 등기의 사유 :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납입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의 규정에 의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명 칭 : ○○ 영농조합법인

사 무 소 : ○○도 ○○군 ○○면 ○○리 ○○번지

분사무소 : ○○도 ○○군 ○○면 ○○리 ○○번지(주2)

목적과 사업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행한다.(주3)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②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③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④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 ⑤ 농작업의 대행
- ⑥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⑦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자1좌의 금액 : 금 ○○○○○원

출자액의 납입방법 : 농지·현금 기타 현물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납입일자에 일시 납입한다 (주4)

출자의 산정방법 : 현물출자액의 산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주5)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출자의 총액 : ○○○○좌 금○○○○○원

해산사유(주6)

이사의 성명과 주소(주7)

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주8)

대표이사 ○ ○ ○

감사의 성명과 주소

감사 ○ ○ ○

○○도 ○○군 ○○면 ○○리 ○○번지(주9)

◦ 첨부서류

(1) 정관(주10)

(2) 창립총회의사록(주11)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농업인 확인서

(6) 기타(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의 인감신고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위와 같이 등기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영농조합법인(주12)

○○도 ○○군 ○○면 ○○리 ○○번지

대표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 귀중

## 주의사항

- 1)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동일 시·군내에서 다른 영농조합법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저촉 여부에 유의해야 함
- 2) 설립당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 3) 정관에 규정한 목적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4·5) 정관에 규정한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 최고한도를 명확히 기재함
- 6) 정관에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 7) 이사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함
- 8)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함
- 9) 이상의 등기를 구하는 사항은 등기부에 등기하는 사항과 같은 것으로서 위 기재사항 외에도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기재할 수 있음
- 10·11)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12)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한 조합원(대표이사)이 신청함



**6. 2006년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

**2006년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

**2007. 9.**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

# 목 차

◎ 2006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요약) .....	133
◎ 2006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 .....	137
I. 조사개요 .....	137
II. 조사결과 .....	139
1. 농어업법인 사업체수 .....	139
가. 조사대상 사업체수 .....	139
나. 운영중인 사업체수 .....	141
다. 미운영 사업체 요인분석 .....	143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45
가. 사업체수 .....	145
나. 종사자수 .....	146
다. 농업경영 현황 .....	148
라.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	152
마. 농축산물 판매(수입)액 .....	155
바. 경영실태 .....	157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	161
가. 사업체수 .....	161
나. 종사자수 .....	162
다. 어업경영 현황 .....	163
라.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	166
마. 수산물 판매(수입)액 .....	169
바. 경영실태 .....	171

# 2006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요약)

## 1. 농어업법인 사업체수

- 2006년 12월 31일 현재 농어업법인 조사대상 사업체는 14,086개이며, 이 중 운영중인 사업체 44.5%, 미운영 사업체 55.5%

##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가. 사업체수

- 운영중인 농업법인 사업체는 5,308개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

### 나. 종사자수

- 2006년 12월 31일 현재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31,427명이며, 전년에 비해 5.1% 증가

◦ 농업법인당 종사자수는 8.6명으로 전년보다 0.2명 많게 나타났음

### 다. 농업경영 현황

- 농업 법인이 경영한 경지면적은 총 14,563ha로 전년에 비해 2.7% 감소
- 법인당 경지면적은 11.6ha로 전년에 비해 3.6% 증가, 법인형태별 경지면적은 영농조합법인 9.8ha이며, 농업회사법인 18.9ha로 나타났음
- 법인당 농작물 재배면적은 12.0ha이며, 노지재배 면적은 14.3ha로 전년 수준이나 시설재배 면적은 3.9ha로 전년에 비해 7.1% 감소
- 2006년 12월 1일 현재 가축사육 사업체는 13.9%(509개)로 전년에 비해 0.6% 증가

## 라.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 농업법인의 출자자수는 73,938명으로 전년에 비해 6.7% 증가하였으며, 출자금은 2억 5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0% 증가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총 출자금은 9,117억 5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3% 증가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부보조금을 받은 사업체는 1,822개로 전년에 비해 1.0% 증가한 반면, 정부융자금 잔액이 있는 사업체는 937개로 전년에 비해 9.6% 감소

## 마. 농축산물 판매(수입)액

- 농업법인의 지난 1년간 총 판매(수입)액은 4조 2,64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4% 증가하였으며, 법인당 판매액은 11억7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

## 바. 경영실태

- 농업 법인당 자산 14억 7천만원, 부채 9억 6천만원, 자본 5억 천만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자산 8.8%, 부채 9.0%, 자본 8.2% 각각 증가
    - 농업법인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88.2%로 전년에 비해 1.2%p 증가
  - 농업 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16억 8천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음
    - 결산법인 중 결손법인은 626개로 26.3%이며, 전년에 비해 9.2% 증가하였음
    -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26.8원, 당기순이익은 28.6원의 이익을 남겼음
- ※ 2006년 제조업 영업이익 1,000원당 54.7원(산업은행 : 2006년 기업재무분석)

###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 가. 사업체수

- 운영중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사업체는 483개로 전년에 비해 2.2% 감소

#### 나. 종사자수

- 2006년 12월 1일 현재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2,442명이며, 전년에 비해 6.0% 증가(법인당 종사자수는 7.2명)

#### 다. 어업경영 현황

- 양식장 보유 사업체는 65.0%(221개)로 전년에 비해 13.3% 감소하였으며, 법인당 양식장 면적은 5.2ha로 전년에 비해 10.3% 감소
- 어업법인 중 어선보유 사업체는 31.5%(107개)이며 전년대비 15.1%, 보유 어선은 258척으로 전년대비 23.9% 각각 감소

#### 라.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 어업법인의 출자자수는 2,591명으로 전년에 비해 4.4% 감소하였으나, 출자금은 648억 5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
  - 법인당 출자자수는 7.6명이며, 법인당 출자금은 1억 9천만원임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부보조금을 받은 사업체는 111개로 전년에 비해 4.7%, 정부융자금을 받은 사업체는 122개로 전년에 비해 7.0% 각각 증가

#### 마. 수산물 판매(수입)액

- 어업법인의 지난 1년간 총 판매(수입)액은 1,91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1% 증가하였으며, 법인당 판매액은 5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

#### 바. 경영실태

- 어업 법인당 자산 9억 5천만원, 부채 6억 9천만원, 자본 2억 6천만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자산 10.5%, 부채 10.5%, 자본 10.1% 각각 증가
  -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65.5%로 전년에 비해 0.9%p 증가

□ 어업 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7억 9천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천 3백만원으로 나타났음

- 결산법인 중 결손법인은 52개로 23.2%이며, 전년에 비해 13.0% 증가
-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45.7원, 당기순이익은 16.5원의 이익을 남겼음

#### 4. 주요 항목별 법인당 지표

(단위 : 개, 명, 백만원)

주요 항목	농업법인		어업법인		비 고
	집 계 법인수	법인당	집 계 법인수	법인당	
출 자 자 수	3,650	20.0	340	7.6	운영중인 사업체 중 개별운영사업체 제외
출 자 금	3,650	249.8	340	190.5	
종 사 자 수	3,657	8.6	340	7.2	
정 부 보 조 금	1,822	315.0	111	191.2	
정 부 용 자 금	937	508.9	122	275.9	
관 매 액	3,657	1,166.1	340	563.3	
자 산	2,381	1,471	224	954	운영중인 사업체 중 결산서 작성법인
부 채	2,381	960	224	693	
자 본	2,381	510	224	261	
매 출 액	2,381	1,680	224	787	
영 업 이 익	2,381	45	224	36	
당 기 순 이 익	2,381	48	224	13	
결 손 제 외	1,755	89	172	41	

# 2006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

##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농어업법인사업체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 2. 조사연혁

- 2001년 : 지정통계로 승인받아 최초 조사 실시
- 2007년 : 제7회 조사 실시

### 3. 법적 근거

- 통계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 제10155호로 승인

### 4. 조사대상

- 대상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농업부문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013),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01421)

- 어업부문 : 어로어업(051), 양식어업(0521)

※ 단,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거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조사대상 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

- 대상 사업체

- 모집단 자료는 법원등기소의 법인설립등기 명부를 기초로 수집하였으며,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추가 보완

## 5. 조사시기

- 조사 기준 일 : 2006. 12. 31.
- 조사 대상 기간 : 2006. 1. 1. ~ 12. 31.(1년간)
- 조사 실시 기간 : 2007. 4. 5. ~ 4. 18.(기간중 10일간)

## 6. 조사체계

- 통계청 ⇔ 지방통계청, 통계사무소(출장소) ⇔ 조사원

## 7. 조사단위

- 일정 장소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농·어업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법인격이 있는 사업체

## 8.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 타계식으로 조사

## 9. 조사항목

- 공통조사항목(11개)
  -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종사자수, 경영개시년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수입(판매)액, 경영실태
- 농업법인 특성 조사항목(4개)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 농작물재배면적, 가축 및 가금사육두수
- 어업법인 특성 조사항목(2개)
  - 양식장 시설, 보유어선 현황



## II. 조사결과

### 1. 농어업법인 사업체수

#### 가. 조사대상 사업체수

##### (1) 총괄

■ 조사대상 사업체 14,086개 중 운영중인 사업체 44.5%, 미운영 사업체 55.5%

□ 2006년 12월 31일 현재 농어업법인 조사대상 사업체는 14,086개이며, 이 중 운영중인 사업체 44.5%, 미운영 사업체 55.5%로 나타났음

◦ 농업법인 중 운영중인 사업체 45.4%이며, 미운영 사업체 54.6%임

◦ 어업법인 중 운영중인 사업체 37.8%이며, 미운영 사업체 62.2%임

《표 1》 농어업법인 조사대상 사업체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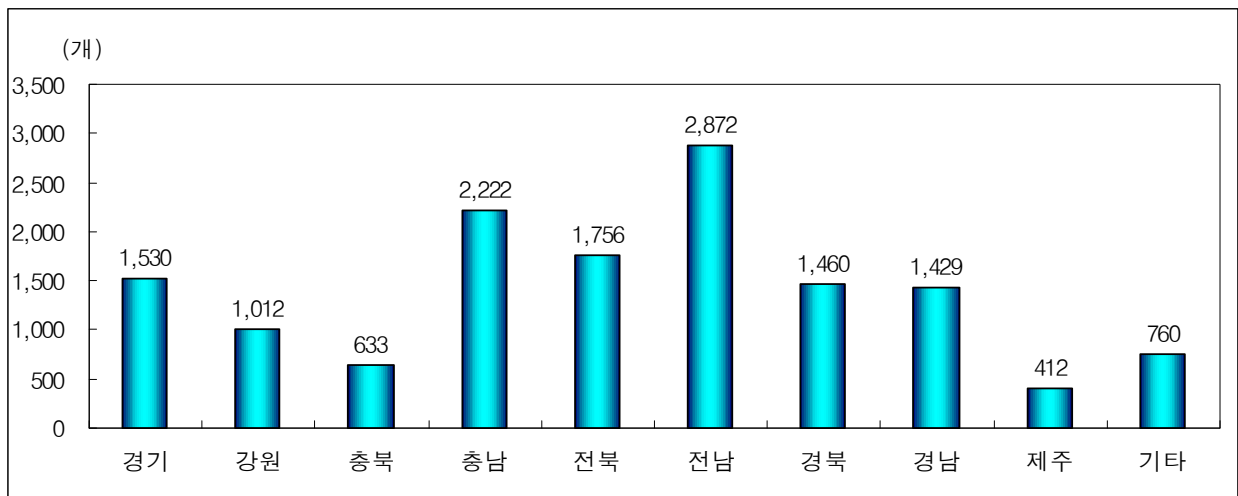
	조사대상 사업체	운영중인 사업체	미운영 사업체				
			소계	사 업 준 비 중	폐업	휴업	기타
계	14,086 (100.0)	6,270 (44.5)	7,816 (55.5)	1,377 (9.8)	565 (4.0)	4,683 (33.2)	1,191 (8.5)
농업법인	12,446 (100.0)	5,650 (45.4)	6,796 (54.6)	1,243 (10.0)	505 (4.1)	4,068 (32.7)	980 (7.9)
영농조합법인	9,362	4,410	4,952	1,109	382	3,216	245
농업회사법인	2,053	898	1,155	119	116	820	100
기    타	1,031	342	689	15	7	32	635
어업법인	1,640 (100.0)	620 (37.8)	1,020 (62.2)	134 (8.2)	60 (3.7)	615 (37.5)	211 (12.9)
영어조합법인	1,278	483	795	125	48	594	28
기    타	362	137	225	9	12	21	183

(2) 시도별

■ 시도별 조사대상 사업체 중 전남 20.4%, 충남 15.8%, 전북 12.5%

□ 농어업법인 조사대상 사업체 중 전남 20.4%, 충남 15.8%, 전북 12.5%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 시도별 농어업법인 조사대상 사업체 분포



《표 2》 시도별 농어업법인 조사대상 사업체

(단위 : 개, %)

시도	계		운영중인 사업체		미운영 사업체					
	개	구성비	개	구성비	소계	구성비	사업준비중	폐업	휴업	기타
계	14,086	100.0	6,270	100.0	7,816	100.0	1,377	565	4,683	1,191
경 기	1,530	10.9	708	11.3	822	10.5	144	63	457	158
강 원	1,012	7.2	414	6.6	598	7.7	110	59	327	102
충 북	633	4.5	309	4.9	324	4.1	40	75	125	84
충 남	2,222	15.8	1,034	16.5	1,188	15.2	402	71	636	79
전 북	1,756	12.5	694	11.1	1,062	13.6	178	41	714	129
전 남	2,872	20.4	1,194	19.0	1,678	21.5	206	108	1,194	170
경 북	1,460	10.4	667	10.6	793	10.1	110	60	506	117
경 남	1,429	10.1	666	10.6	763	9.8	90	57	533	83
제 주	412	2.9	254	4.1	158	2.0	42	12	56	48
기 타 <sup>1)</sup>	760	5.4	330	5.3	430	5.5	55	19	135	221

※ 주 1) 기타는 특·광역시

## 나. 운영중인 사업체수

### (1) 총 괄

■ 운영중인 농어업 법인 사업체는 6,270개로 전년대비 0.1% 증가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는 6,270개로 전년에 비해 0.1% 증가하였음

- 농업법인 사업체는 90.1%이며, 어업법인 사업체는 9.9%로 조사되었음
- 운영주체별로는 대표자 단독운영 및 출자자 공동운영은 전년에 비해 각각 5.5%, 1.5% 증가하였으나, 출자자 개별운영은 전년에 비해 2.8% 감소하였음

《표 3》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

		운영중인 사업체 계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 개별운영 <sup>2)</sup>	
		개	구성비				
계	2005	6,265	100.0	3,110	798	1,846	
	2006	6,270	100.0	3,155	842	1,794	
	증 감	5	-	46	44	-52	
	증감률	0.1	-	1.5	5.5	-2.8	
농 업 법 인	2005	5,626	89.8	2,841	708	1,711	
	2006	5,650	90.1	2,892	765	1,651	
	영농조합법인	2005	4,293	(68.5)	2,396	562	1,335
		2006	4,410	(70.3)	2,467	599	1,344
	농업회사법인	2005	967	(15.4)	445	146	376
		2006	898	(14.3)	425	166	307
	일반회사법인	2005	88	(1.4)	-	-	-
		2006	66	(1.0)	-	-	-
	기 타 법 인 <sup>1)</sup>	2005	278	(4.4)	-	-	-
		2006	276	(4.4)	-	-	-
어 업 법 인	2005	639	10.2	269	90	135	
	2006	620	9.9	263	77	143	
	영어조합법인	2005	494	(7.9)	269	90	135
		2006	483	(7.7)	263	77	143
	일반회사법인	2005	103	(1.6)	-	-	-
		2006	98	(1.6)	-	-	-
	기 타 법 인 <sup>1)</sup>	2005	42	(0.7)	-	-	-
		2006	39	(0.6)	-	-	-

주 1) 국가·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사업체를 말함

2) 「출자자 개별운영」 사업체는 본 조사에서 조사표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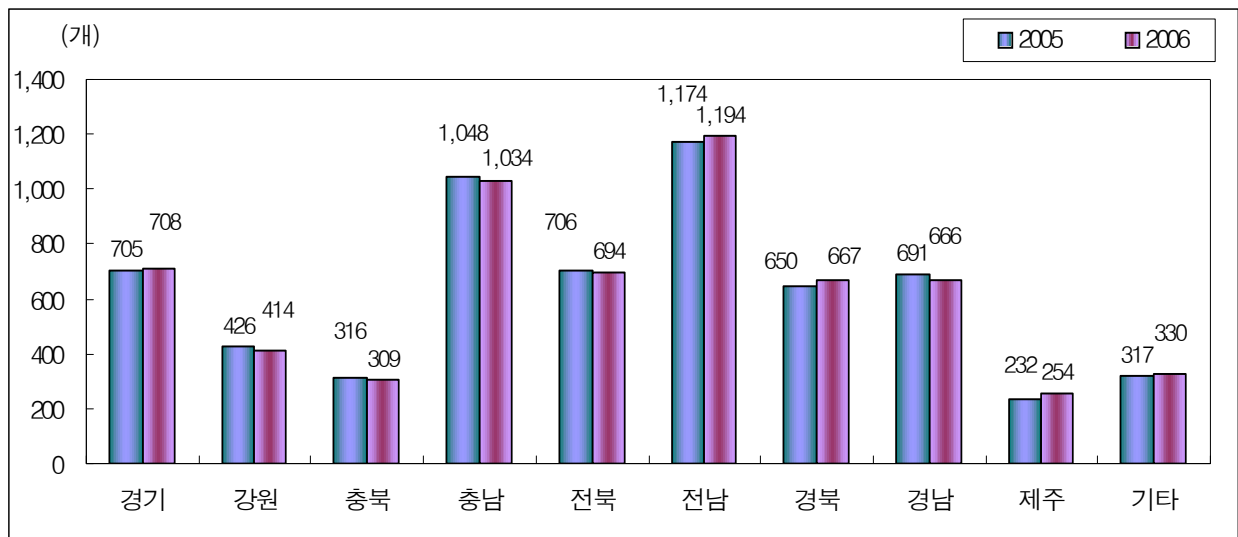
(2) 시도별

■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 중 전남이 19.0%로 가장 많음

□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는 전남 19.0%, 충남 16.5%, 경기 11.3% 순으로 나타났음

◦ 농어업법인 사업체는 전년에 비해 제주 9.5%, 경북 2.6%, 전남 1.7%, 경기 0.4% 증가하였으나 경남 등 5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시도별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 분포



《표 4》 시도별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

(단위 : 개, %)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sup>1)</sup>
2005	6,265 (100.0)	705 (11.3)	426 (6.8)	316 (5.0)	1,048 (16.7)	706 (11.3)	1,174 (18.7)	650 (10.4)	691 (11.0)	232 (3.7)	317 (5.1)
2006	6,270 (100.0)	708 (11.3)	414 (6.6)	309 (4.9)	1,034 (16.5)	694 (11.1)	1,194 (19.0)	667 (10.6)	666 (10.6)	254 (4.1)	330 (5.3)
증 감	5	3	-12	-7	-14	-12	20	17	-25	22	13
증감률	0.1	0.4	-2.8	-2.2	-1.3	-1.7	1.7	2.6	-3.6	9.5	4.1

주 1) 기타는 특·광역시

## 다. 미운영 사업체 요인분석

### (1) 사업준비중

■미운영 사업체 중 사업준비중인 사업체는 17.6%

□ 미운영 사업체 중 사업준비중인 사업체는 17.6%(1,377개)임

◦ 사업준비중인 사업체 사유별로 보면, 시설준비·교체·복구 47.1%, 운영자금 마련 17.2%, 상품개발·관로준비 14.0% 순으로 파악됨

《표 5》 사업준비중인 사유별 사업체

(단위 : 개, %)

	미운영 사업체	사업준비중인 사유별 사업체					
		계	시설준비· 교체·복구	물량확보	상품개발· 관로준비	운영자금 마련	기타
계	7,816	1,377 (100.0)	648 (47.1)	91 (6.6)	193 (14.0)	237 (17.2)	208 (15.1)
농업법인	6,796	1,243 (100.0)	573 (46.1)	85 (6.8)	183 (14.7)	205 (16.5)	197 (15.8)
어업법인	1,020	134 (100.0)	75 (56.0)	6 (4.5)	10 (7.5)	32 (23.9)	11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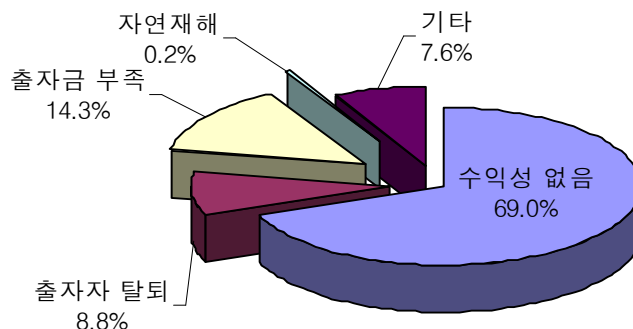
### (2) 폐업

■폐업 사업체 중 69.0%가 수익성이 없어 폐업

□ 미운영 사업체 중 폐업 사업체는 7.2%(565개)이며, 농업법인 89.4%, 어업법인 10.6%임

◦ 폐업 사유는 수익성이 없음 69.0%, 출자금 부족 14.3%, 출자자 탈퇴 8.8% 순으로 파악됨

【그림 3】 폐업 사유별 사업체 구성비



《표 6》 폐업 사유별 사업체

(단위 : 개, %)

	미운영 사업체	폐업 사업체수					
		계	수익성 없음	출자자 탈퇴	출자금 부족	자연재해	기타
계	7,816	565 (100.0)	390 (69.0)	50 (8.8)	81 (14.3)	44 (7.8)	44 (7.6)
농업법인	6,796	505 (100.0)	352 (69.7)	46 (9.1)	68 (13.5)	39 (7.7)	39 (6.7)
어업법인	1,020	60 (100.0)	38 (63.3)	4 (6.7)	13 (21.7)	5 (8.3)	5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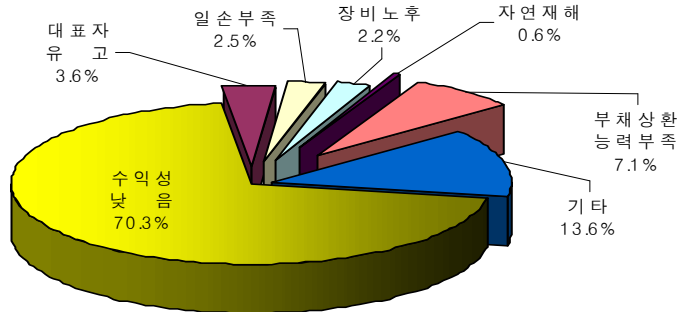
(3) 휴업

■ 휴업 사업체는 미운영 사업체의 59.9%, 수익성 낮아 휴업한 사업체는 70.3%

□ 미운영 사업체 중 휴업 사업체는 59.9%(4,683개)이며, 농업법인 86.9%, 어업법인 13.1%임

◦ 휴업 사유별 구성비를 보면, 수익성이 낮아 휴업한 사업체는 70.3%로 가장 많고, 부채상환 능력부족 7.1%, 대표자 유고 3.6% 순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4】 휴업 사유별 사업체 구성비



《표 7》 휴업 사유별 사업체

(단위 : 개, %)

	미운영 사업체	휴업 사유별 사업체							
		계	수익성 낮음	대표자 유고	일손 부족	장비 노후	자연 재해	부채상환 능력부족	기타
계	7,816	4,683 (100.0)	3,294 (70.3)	168 (3.6)	118 (2.5)	102 (2.2)	30 (0.6)	334 (7.1)	637 (13.6)
농업법인	6,796	4,068 (100.0)	2,908 (71.5)	148 (3.6)	114 (2.8)	101 (2.5)	20 (0.5)	269 (6.6)	508 (12.5)
어업법인	1,020	615 (100.0)	386 (62.8)	20 (3.3)	4 (0.7)	1 (0.2)	10 (1.6)	65 (10.6)	129 (21.0)

##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가. 사업체수

■ 운영중인 농업법인 사업체는 5,308개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

□ 운영중인 농업법인 사업체는 5,308개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하였음

◦ 법인형태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 83.1%, 농업회사법인은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영농조합법인은 1.5%p 높아짐

□ 운영주체별로는 전년에 비해 대표자 단독운영 및 출자자 공동운영은 전년보다 각각 8.1%, 1.8% 증가한 반면, 출자자 개별운영은 전년보다 3.5% 감소하였음

《표 8》 운영중인 농업법인 사업체

(단위 : 개, %, %p)

		운영중인 사업체 계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sup>1)</sup> 개별운영
			구성비			
계	2005	5,260	100.0	2,841	708	1,711
	2006	5,308	100.0	2,892	765	1,651
	증 감	48	-	51	57	-60
	증감률	0.9	-	1.8	8.1	-3.5
영농조합법인	2005	4,293	81.6	2,396	562	1,335
	2006	4,410	83.1	2,467	599	1,344
	증 감	117	1.5	71	37	9
	증감률	2.7	-	3.0	6.6	0.7
농업회사법인	2005	967	18.4	445	146	376
	2006	898	16.9	425	166	307
	증 감	-69	-1.5	-20	20	-69
	증감률	-7.1	-	-4.5	13.7	-18.4

주 1) 『출자자 개별운영』 사업체는 본 조사에서 조사표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나. 종사자수

▪농업법인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31,427명이며, 법인당 8.6명

□ 2006년 12월 31일 현재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31,427명이며, 전년에 비해 5.1% 증가하였음

◦ 상근종사자수, 임시 및 일일 종사자수는 전년에 비해 각각 4.7%, 5.8% 증가하였음

◦ 농업법인당 종사자수는 8.6명으로 전년보다 0.2명 많게 나타났음

□ 사업체형태별 종사자수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당 8.2명, 농업회사법인은 법인당 10.8명으로 나타났음

◦ 영농조합법인은 상근종사자 64.7%, 임시 및 일일 종사자 35.3%이며, 농업회사법인은 상근종사자 62.9%, 임시 및 일일 종사자 37.1%임

《표 9》 농업법인 사업체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사업체	종사자 합 계	상근종사자			임시및일일 종 사 자	법 인 당 종사자수	
			계	출자자	고용			
계	2005	3,549	29,901 (100.0)	19,302 (64.6)	9,908 (33.1)	9,394 (31.4)	10,599 (35.4)	8.4
	2006	3,657	31,427 (100.0)	20,208 (64.3)	9,813 (31.2)	10,395 (33.1)	11,219 (35.7)	8.6
	증 감	108	1,526	906	-95	1,001	620	0.2
	증감률	3.0	5.1	4.7	-1.0	10.7	5.8	2.4
영농조합 법 인	2005	2,958	24,411 (100.0)	15,729 (64.4)	8,342 (34.2)	7,387 (30.3)	8,682 (35.6)	8.3
	2006	3,066	25,018 (100.0)	16,176 (64.7)	8,368 (33.4)	7,808 (31.2)	8,842 (35.3)	8.2
농업회사 법 인	2005	591	5,490 (100.0)	3,573 (65.1)	1,566 (28.5)	2,007 (36.6)	1,917 (34.9)	9.3
	2006	591	6,409 (100.0)	4,032 (62.9)	1,445 (22.5)	2,587 (40.4)	2,377 (37.1)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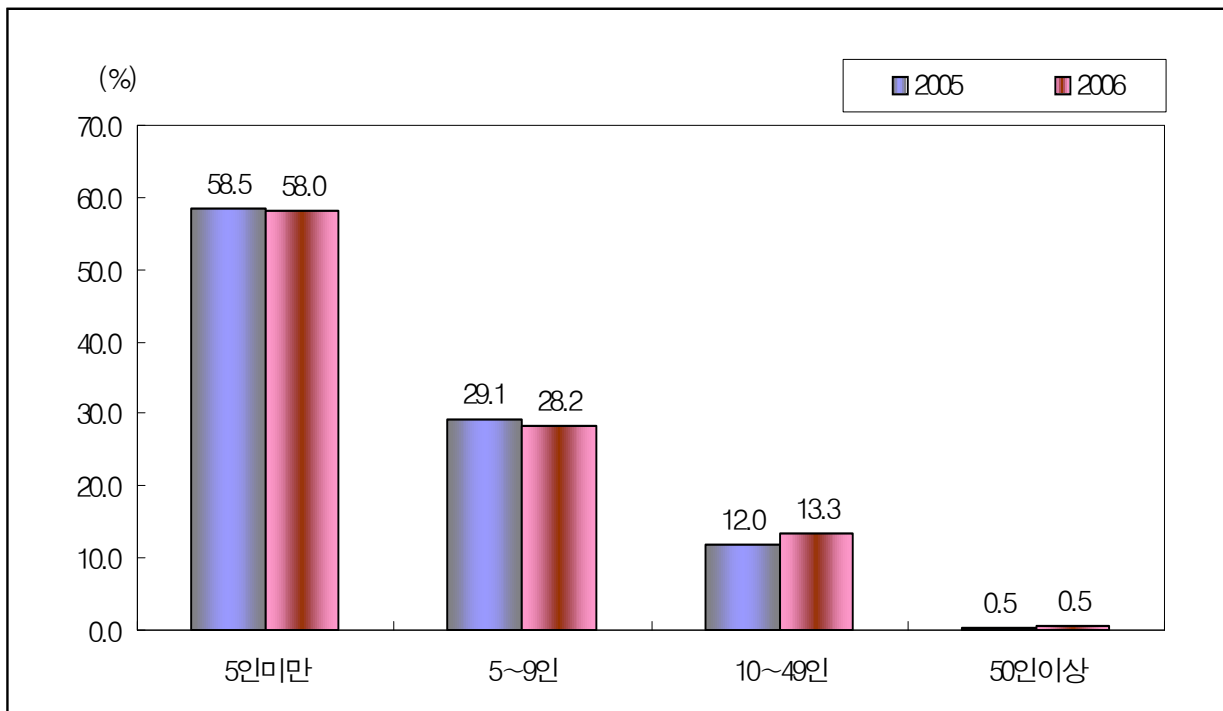
- 상근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를 보면, 『5인미만』 58.0%, 『5~9인』 28.2%, 『10~49인』 13.3%, 『50인이상』 0.5% 순으로 나타났음
- 상근종사자 규모가 적은 『5인미만』 사업체가 58.0%로 영세사업체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음

《표 10》 상근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단위 : 개, %)

	사업체	5인미만	5~9인	10~49인	50인이상
2005	3,549 (100.0)	2,075 (58.5)	1,033 (29.1)	425 (12.0)	16 (0.5)
2006	3,657 (100.0)	2,122 (58.0)	1,032 (28.2)	486 (13.3)	17 (0.5)
증 감	108	47	-1	61	1
증감률	3.0	2.3	-0.1	14.4	6.3

【그림 5】 상근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구성비



## 다. 농업경영 현황

### (1) 농업시설물

- 농업시설물 보유 사업체 78.9%이며, 농업시설물은 전년에 비해 2.5% 증가
- 농업시설물 보유사업체는 78.9%(2,886개)로 전년에 비해 0.6% 감소한 반면, 농업시설물은 전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법인이 보유한 농업시설물은 전년에 비해 가공공장 12.3%, 축사 5.4%, 각각 증가한 반면, 농기계 창고, 건조장, 선과선별장은 각각 14.6%, 14.2%, 7.1% 감소하였음
- 농업시설물은 축사가 28.0%로 가장 많고, 농기계 창고 9.9%, 선과선별장 7.9% 순으로 나타났음

《표 11》 농업시설물 보유 현황

(단위 : 개, %)

	사업체	시설물 보유 사업체	농업시설물									
			계	선과선별장	농기계 창고	건조장	가공공장	축사	중배양장	사료창고	기타 <sup>1)</sup>	
계	2005	3,549 (100.0)	2,904 (81.8)	12,632 (100.0)	1,106 (8.8)	1,495 (11.8)	1,007 (8.0)	661 (5.2)	3,441 (27.2)	249 (2.0)	755 (6.0)	3,918 (31.0)
	2006	3,657 (100.0)	2,886 (78.9)	12,953 (100.0)	1,027 (7.9)	1,277 (9.9)	864 (6.7)	742 (5.7)	3,628 (28.0)	239 (1.8)	742 (5.7)	4,434 (34.2)
	증 감	108	-18	321	-79	-218	-143	81	187	-10	-13	516
	증감률	3.0	-0.6	2.5	-7.1	-14.6	-14.2	12.3	5.4	-4.0	-1.7	13.2
영농조합인	2005	2,958 (100.0)	2,385 (80.6)	10,843 (100.0)	1,045 (9.6)	1,066 (9.8)	716 (6.6)	578 (5.3)	2,964 (27.3)	234 (2.2)	711 (6.6)	3,529 (32.5)
	2006	3,066 (100.0)	2,373 (77.4)	10,791 (100.0)	975 (9.0)	869 (8.1)	618 (5.7)	639 (5.9)	2,874 (26.6)	224 (2.1)	675 (6.3)	3,917 (36.3)
농업회사인	2005	591 (100.0)	519 (87.8)	1,789 (100.0)	61 (3.4)	429 (24.0)	291 (16.3)	83 (4.6)	477 (26.7)	15 (0.8)	44 (2.5)	389 (21.7)
	2006	591 (100.0)	513 (86.8)	2,162 (100.0)	52 (2.4)	408 (18.9)	246 (11.4)	103 (4.8)	754 (34.9)	15 (0.7)	67 (3.1)	517 (23.9)

주 1) 저온 저장고, 농업자재 창고 등의 기타 시설물을 말함

## (2) 경영경지면적

■ 농업 법인당 경영경지면적은 11.6ha로 전년에 비해 3.6% 증가

□ 농업 법인이 경영한 경지면적은 총 14,563ha로 전년에 비해 2.7% 감소하였음

◦ 논면적 46.3%, 밭면적 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각각 4.2%, 1.4% 감소함

◦ 2006년 12월 31일 현재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이 전체 경지면적(1,008.5천ha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의 1.4%임

※ 법인당 경지면적 증가는 경지면적 보유 사업체(1,257개)가 전년에 비해 5.6% 감소로 경지면적 감소보다 크기 때문임

□ 법인당 경지면적은 11.6ha로 전년에 비해 3.6% 증가, 법인형태별 경지면적은 영농조합법인 9.8ha이며, 농업회사법인 18.9ha로 나타났음

《표 12》 경영 경지면적

(단위 : 개, ha, %)

		사업 체수	보유 사업체수	경지면적				법인당 경지면적
				계	논	밭	과수원	
계	2005	3,549 (100.0)	1,331 (37.5)	14,966 (100.0)	7,028 (47.0)	7,937 (53.0)	1,090 (7.3)	11.2
	2006	3,657 (100.0)	1,257 (34.4)	14,563 (100.0)	6,736 (46.3)	7,827 (53.7)	1,087 (7.5)	11.6
	증 감	108	-74	-403	-292	-110	-3	0.4
	증감률	3.0	-5.6	-2.7	-4.2	-1.4	-0.3	3.6
영농조합 법인	2005	2,958 (100.0)	1,082 (36.6)	10,103 (100.0)	3,340 (33.1)	6,763 (66.9)	1,008 (10.0)	9.3
	2006	3,066 (100.0)	1,011 (33.0)	9,917 (100.0)	3,307 (33.3)	6,609 (66.6)	1,028 (10.4)	9.8
농업회사 법인	2005	591 (100.0)	249 (42.1)	4,863 (100.0)	3,688 (75.8)	1,175 (24.2)	83 (1.7)	19.5
	2006	591 (100.0)	246 (41.6)	4,646 (100.0)	3,429 (73.8)	1,218 (26.2)	59 (1.3)	18.9

### (3) 재배유형별 면적

■ 농작물 재배 사업체는 전년에 비해 2.7% 감소, 법인당 재배면적 12.0ha

□ 농업법인 사업체 중 농작물 재배 사업체는 36.0%로 전년에 비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인당 농작물 재배면적은 12.0ha이며, 노지재배 면적은 14.3ha로 전년 수준이나 시설재배 면적은 3.9ha로 전년에 비해 7.1% 감소하였음

□ 법인형태별·재배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농업회사법인은 노지재배가 96.6%로 영농조합법인의 노지재배(85.1%)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법인당 재배면적은 농업회사법인이 19.8ha로 영농조합법인(10.2ha)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 농작물 재배유형별 면적

(단위 : 개, ha, %)

	사업체	재 배 사업체	재배면적 계		노지재배			시설재배			
			재배 면적	법인당	사업체	재배 면적	법인당	사업체	재배 면적	법인당	
계	2005	3,549 (100.0)	1,354 (38.2)	16,214 (100.0)	12.0 -	987 -	14,142 (87.2)	14.3 -	498 -	2,072 (12.8)	4.2
	2006	3,657 (100.0)	1,318 (36.0)	15,809 (100.0)	12.0 -	980 -	14,014 (88.6)	14.3 -	465 -	1,795 (11.4)	3.9
	증 감	108	-36	-405	-	-7	-128	-	-33	-277	-0.3
	증감률	3.0	-2.7	-2.5	-	-0.7	-0.9	-	-6.6	-13.4	-7.1
영농조합 법 인	2005	2,958 (100.0)	1,104 (37.3)	11,217 (100.0)	10.2 -	764 -	9,256 (82.5)	12.1 -	451 -	1,960 (17.5)	4.3
	2006	3,066 (100.0)	1,071 (34.9)	10,922 (100.0)	10.2 -	760 -	9,296 (85.1)	12.2 -	415 -	1,627 (14.9)	3.9
농업회사 법 인	2005	591 (100.0)	250 (42.3)	4,998 (100.0)	20.0 -	223 -	4,886 (97.8)	21.9 -	47 -	112 (2.2)	2.4
	2006	591 (100.0)	247 (41.8)	4,886 (100.0)	19.8 -	220 -	4,718 (96.6)	21.4 -	50 -	168 (3.4)	3.4

#### (4) 가축 및 가금 사육·판매두수

▪한육우, 젓소, 닭 사육 및 판매 마리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

□ 2006년 12월 1일 현재 가축사육 사업체는 13.9%(509개)로 전년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축 사육두수 중 한육우 3.4%, 젓소 21.7%, 닭 39.1% 각각 감소하였으나 돼지는 3.2% 증가함

※ 조류독감 및 FTA 등의 영향으로 가축사육(닭, 소)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지난 1년간 가축 판매두수는 전년에 비해 닭 36.1%, 젓소 21.5%, 한육우 16.6% 각각 감소하였으나 돼지는 8.6% 증가함

《표 14》 가축 사육 및 판매두수

(단위 : 개, 마리, %)

	사업체	가축사육 사업체	가축 사육두수					가축 판매두수				
			구성비	한육우	젓소	돼지 (천마리)	닭 (천마리)	한육우	젓소	돼지 (천마리)	닭 (천마리)	
계	2005	3,549	506	14.3	25,753	3,316	1,462	21,327	11,765	391	2,423	155,913
	2006	3,657	509	13.9	24,890	2,595	1,509	12,979	9,816	307	2,631	99,611
	증 감	108	3	-	-863	-721	47	-8,348	-1,949	-84	208	-56,301
	증감률	3.0	0.6	-	-3.4	-21.7	3.2	-39.1	-16.6	-21.5	8.6	-36.1
영농조합인	2005	2,958	450	15.2	24,533	3,268	1,258	17,809	10,637	331	2,005	35,958
	2006	3,066	432	14.1	22,407	2,595	1,151	9,783	8,767	307	1,995	31,247
농업회사인	2005	591	56	9.5	1,220	48	204	3,517	1,128	60	418	1,19,955
	2006	591	77	13.0	2,483	-	358	3,196	1,049	-	636	68,364

## 라.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 (1) 출자자수 및 출자금

■ 농업 법인당 출자자수는 20.3명, 법인당 출자금은 2억 5천만원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총 출자자수는 73,938명으로 전년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법인 출자자수 중 농업인 94.1%이며, 비농업인 5.9%로 나타났음

◦ 법인당 출자자수는 20.3명이며, 영농조합법인 22.1명, 농업회사법인 10.4명임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총 출자금은 9,117억 5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3% 증가하였음

◦ 법인당 출자금은 2억 5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0% 증가

◦ 출자금 중 현금출자 비율이 83.3%, 현물출자금은 16.7%로 전년에 비해 각각 10.9%, 1.8% 증가

《표 15》 출자자수 및 출자금

(단위 : 개, 명, 백만원, %)

	출자 법인수 <sup>1)</sup>	출자자수				출자금				
		계	농업인 <sup>2)</sup>	비농업인	법인당	계	현금출자	현물출자	법인당	
계	2005	3,542	69,297 (100.0)	65,421 (94.4)	3,876 (5.6)	19.6	834,537 (100.0)	684,614 (82.0)	149,923 (18.0)	235.6
	2006	3,650	73,938 (100.0)	69,558 (94.1)	4,380 (5.9)	20.3	911,748 (100.0)	759,056 (83.3)	152,692 (16.7)	249.8
	증 감	108	4,641	4,137	504	0.7	77,211	74,442	2,769	14.2
	증감률	3.0	6.7	6.3	13.0	3.6	9.3	10.9	1.8	6.0
영농조합 법인	2005	2,953	64,731 (100.0)	61,347 (94.8)	3,384 (5.2)	21.9	656,121 (100.0)	540,341 (82.4)	115,780 (17.6)	222.2
	2006	3,063	67,827 (100.0)	63,996 (94.4)	3,831 (5.6)	22.1	703,625 (100.0)	586,695 (83.4)	116,930 (16.6)	229.7
농업회사 법인	2005	589	4,566 (100.0)	4,074 (89.2)	492 (10.8)	7.8	178,416 (100.0)	144,273 (80.9)	34,143 (19.1)	302.9
	2006	587	6,111 (100.0)	5,562 (91.0)	549 (9.0)	10.4	208,123 (100.0)	172,361 (82.8)	35,762 (17.2)	3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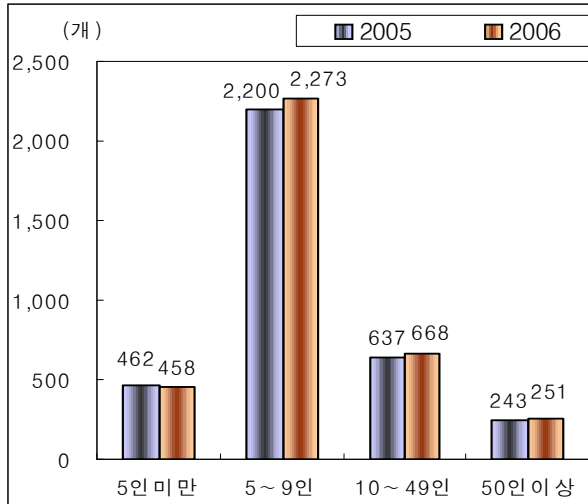
주 1) 출자법인수는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중 단독사업체, 본사·본점인 법인만 조사

2) 출자자 중 생산자단체(47개)는 농업인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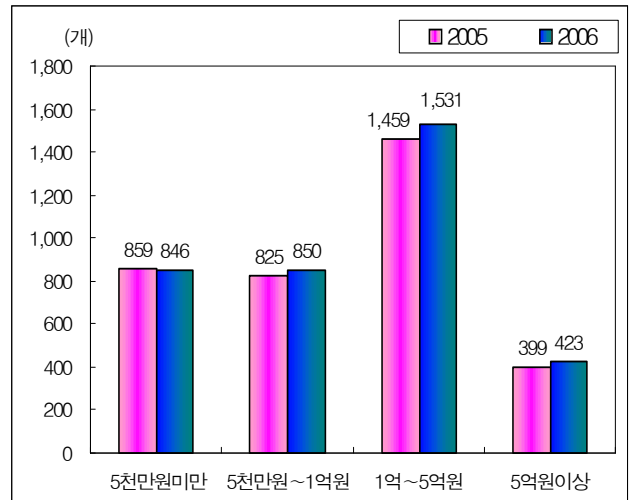
□ 출자자수 규모별 사업체는 『5~9인』 사업체는 62.3%로 가장 높고, 『10~49인』 18.3%, 『5인미만』 12.5%, 『50인이상』 6.9% 순임

□ 출자금 규모별 사업체는 『1억~5억원』 41.9%, 『5천만원~1억원』 23.3%, 『5천만원미만』 23.2%, 『5억원이상』 11.6%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6】 출자자수 규모별 사업체 분포



【그림 7】 출자금 규모별 사업체 분포



《표 16》 출자자수 및 출자금 규모별 사업체

(단위 : 개, %)

	사업체	출자 법인수	출자자수 규모별				출자금 규모별				
			5인 미만	5 ~ 9인	10 ~ 49인	50인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1억 ~ 5억원	5억원 이상	
계	2005	3,549	3,542 (100.0)	462 (13.0)	2,200 (62.1)	637 (18.0)	243 (6.9)	859 (24.3)	825 (23.3)	1,459 (41.2)	399 (11.3)
	2006	3,657	3,650 (100.0)	458 (12.5)	2,273 (62.3)	668 (18.3)	251 (6.9)	846 (23.2)	849 (23.3)	1,531 (41.9)	422 (11.6)
	증 감	108	108	-4	73	31	8	-13	24	72	23
	증감률	3.0	3.0	-0.9	3.3	4.9	3.3	-1.5	2.9	4.9	5.8
영농조합 법 인	2005	2,958	2,953 (100.0)	225 (7.6)	1,886 (63.9)	606 (20.5)	236 (8.0)	714 (24.2)	676 (22.9)	1,237 (41.9)	326 (11.0)
	2006	3,066	3,063 (100.0)	202 (6.6)	1,985 (64.8)	636 (20.8)	240 (7.8)	720 (23.5)	705 (23.0)	1,302 (42.5)	335 (10.9)
농업회사 법 인	2005	591	589 (100.0)	237 (40.2)	314 (53.3)	31 (5.3)	7 (1.2)	145 (24.6)	149 (25.3)	222 (37.7)	73 (12.4)
	2006	591	587 (100.0)	256 (43.6)	288 (49.1)	32 (5.5)	11 (1.9)	126 (21.5)	145 (24.7)	229 (39.0)	87 (14.8)

(2) 정부 지원금

▪ 농업법인당 정부보조금은 3억 2천만원, 정부융자금 잔액은 5억 천만원 수준임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부보조금을 받은 사업체는 1,822개로 전년에 비해 1.0% 증가한 반면, 정부융자금 잔액이 있는 사업체는 937개로 전년에 비해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법인당 정부보조금(백만원) :	176.7	231.4	236.7	247.2	264.2	280.4	315.0
전년대비 증감률(%)	(-)	(31.0)	(2.3)	(4.4)	(6.9)	(6.1)	(12.3)
법인당 정부융자금(백만원) :	219.6	304.1	347.5	378.9	425.5	444.4	508.9
전년대비 증감률(%)	(-)	(38.5)	(14.3)	(9.0)	(12.3)	(4.4)	(14.5)

-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3억 2천만원, 정부융자금 잔액은 5억 천만원 수준임
-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전년에 비해 12.3%, 법인당 정부융자금 잔액은 14.5% 각각 증가하였으며, 2000년기준 농업법인조사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표 17》 정부 지원금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체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법인수	금액	법인당	법인수	금액	법인당	
계	2005	3,549	1,804	505,877	280.4	1,037	460,888	444.4
	2006	3,657	1,822	573,864	315.0	937	476,807	508.9
	증 감	108	18	67,987	34.6	-100	15,919	64.5
	증감률	3.0	1.0	13.4	12.3	-9.6	3.5	14.5
영농조합인	2005	2,958	1,485	452,086	304.4	866	405,109	467.8
	2006	3,066	1,530	498,721	326.0	793	408,680	515.4
농업회사인	2005	591	319	53,791	168.6	171	55,779	326.2
	2006	591	292	75,143	257.3	144	68,127	473.1



## 마. 농축산물 판매(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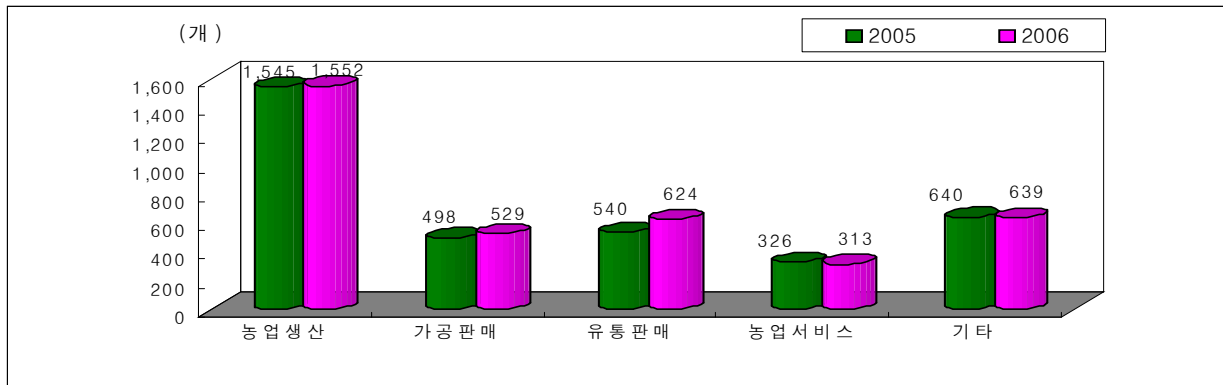
### (1) 농축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수

■ 농축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는 유통판매사업체가 전년에 비해 15.6% 증가

□ 농업법인의 농축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를 보면, 농업생산 42.4%, 유통판매 17.1%, 가공판매 14.5%, 농업서비스 8.6%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에 비해 유통판매 사업체는 15.6%, 가공판매 6.2%, 농업생산 0.5% 각각 증가한 반면, 농업서비스 4.0%, 기타사업수입 0.2% 각각 감소함

【그림 8】 농축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 분포



《표 18》 농축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

(단위 : 개, %)

		계	농업생산 <sup>1)</sup>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sup>2)</sup>	기타사업수입
계	2005	3,549 (100.0)	1,545 (43.5)	498 (14.0)	540 (15.2)	326 (9.2)	640 (18.0)
	2006	3,657 (100.0)	1,552 (42.4)	529 (14.5)	624 (17.1)	313 (8.6)	639 (17.5)
	증 감	108	7	31	84	-13	-1
	증감률	3.0	0.5	6.2	15.6	-4.0	-0.2
영농조합 법인	2005	2,958 (100.0)	1,290 (43.6)	433 (14.6)	500 (16.9)	140 (4.7)	595 (20.1)
	2006	3,066 (100.0)	1,285 (41.9)	459 (15.0)	570 (18.6)	152 (5.0)	598 (19.5)
농업회사 법인	2005	591 (100.0)	255 (43.1)	65 (11.0)	40 (6.8)	186 (31.5)	45 (7.6)
	2006	591 (100.0)	267 (45.2)	67 (11.3)	54 (9.1)	160 (27.1)	43 (7.3)

주 1) 농업생산은 작물재배 및 축산이 포함되었음

2) 농업서비스는 영농대행이 포함되었음

## (2) 농축산물 판매(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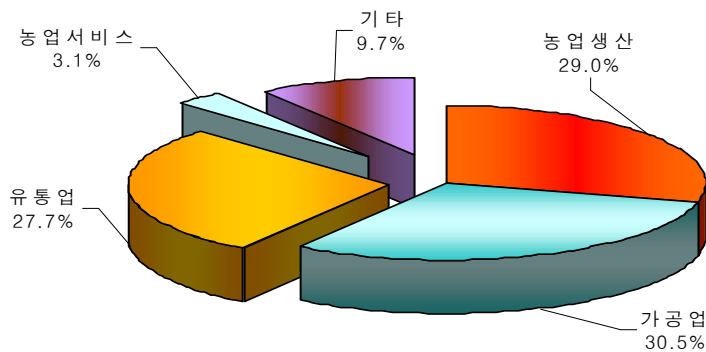
▪연간 법인당 판매(수입)액은 11억 7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

□ 농업법인의 지난 1년간 총 판매(수입)액은 4조 2,64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4% 증가하였으며, 법인당 판매액은 11억7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함

□ 농업생산수입은 29.0%로 전년에 비해 0.7% 감소한 반면, 농업생산 이외 사업수입은 71.0%로 전년에 비해 11.0% 증가하였음

◦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중 가공업 30.5%, 유통업 27.7%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9】 농축산물 판매 유형별 판매액 구성비



《표 19》 농축산물 판매 유형별 판매액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체	판매액 계	농업생산 수입 <sup>1)</sup>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법인당	
				소계	가공업	유통업	농 서비스업 <sup>1)</sup>	기타		
계	2005	3,549	3,972,452 (100.0)	1,244,429 (31.3)	2,728,023 (68.7)	1,130,957 (28.5)	1,017,031 (25.6)	110,505 (2.8)	469,530 (11.8)	1,119.3
	2006	3,657	4,264,491 (100.0)	1,235,647 (29.0)	3,028,844 (71.0)	1,302,461 (30.5)	1,180,087 (27.7)	131,670 (3.1)	414,626 (9.7)	1,166.1
	증 감	108	292,039	-8,782	300,821	171,504	163,056	21,165	-54,904	46.8
	증감률	3.0	7.4	-0.7	11.0	15.2	16.0	19.2	-11.7	4.2
영농조합 법 인	2005	2,958	3,111,837 (100.0)	982,271 (31.6)	2,129,566 (68.4)	872,971 (28.1)	860,959 (27.7)	98,142 (3.2)	297,494 (9.6)	1,052.0
	2006	3,066	3,284,850 (100.0)	938,374 (28.6)	2,346,476 (71.4)	979,351 (29.8)	920,584 (28.0)	115,943 (3.5)	330,598 (10.1)	1,071.4
농업회사 법 인	2005	591	860,615 (100.0)	262,158 (30.5)	598,457 (69.5)	257,986 (30.0)	156,072 (18.1)	12,363 (1.4)	172,036 (20.0)	1,456.2
	2006	591	979,641 (100.0)	297,273 (30.3)	682,368 (69.7)	323,110 (33.0)	259,503 (26.5)	15,727 (1.6)	84,028 (8.6)	1,657.6

주 1) 농업생산은 작물재배 및 축산이 포함되었음

2) 농업서비스는 영농대행이 포함되었음

## 바. 경영실태

### (1) 회계장부 작성여부 및 사무실 사용여부

#### ■ 농업법인 사업체 중 결산서 작성 법인은 65.2%

- 농업법인의 결산서 작성 사업체는 65.2%(2,381개)로 전년에 비해 9.2% 증가하였음
  - 전년에 비해 결산서 미작성 및 간이기장 사업체는 각각 10.9%, 1.9 감소하였음
  - 법인형태별 결산서 작성 사업체는 영농조합법인 67.2%, 농업회사법인 55.0%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보다 결산서 작성률이 높게 나타났음
- 농업법인 중 사무실이 있는 사업체는 72.5%(2,646개)로 전년에 비해 5.7% 증가하였음
  - 사무실 있는 사업체를 전년과 비교하면, 무상 14.6%, 임차 12.7%, 법인소유 3.1% 각각 증가하였음

《표 20》 회계장부 작성여부 현황

(단위 : 개, %)

	사업체	결산서 작성여부					사무실 사용여부				
		계	결산서 작성	간이기장	미작성	사무실 있는 사업체				사무실 없는 사업체	
						계	법인소유	임차	무상		
계	2005	3,549	3,542 (100.0)	2,180 (61.5)	626 (17.7)	736 (20.8)	2,503 (70.7)	1,855 (52.4)	449 (12.7)	199 (5.6)	1,046 (29.5)
	2006	3,657	3,651 (100.0)	2,381 (65.2)	614 (16.8)	656 (18.0)	2,646 (72.5)	1,912 (52.4)	506 (13.9)	228 (6.2)	1,011 (27.7)
	증 감	108	109	201	-12	-80	143	57	57	29	-35
	증감률	3.0	3.1	9.2	-1.9	-10.9	5.7	3.1	12.7	14.6	-3.3
영농조합법인	2005	2,958	2,953 (100.0)	1,905 (64.5)	493 (16.7)	555 (18.8)	2,150 (72.8)	1,595 (54.0)	386 (13.1)	169 (5.7)	808 (27.4)
	2006	3,066	3,066 (100.0)	2,059 (67.2)	481 (15.7)	526 (17.2)	2,263 (73.8)	1,627 (53.1)	437 (14.3)	199 (6.5)	803 (26.2)
농업회사법인	2005	591	589 (100.0)	275 (46.7)	133 (22.6)	181 (30.7)	353 (59.9)	260 (44.1)	63 (10.7)	30 (5.1)	238 (40.4)
	2006	591	587 (100.0)	323 (55.0)	134 (22.8)	130 (22.1)	383 (65.2)	285 (48.6)	69 (11.8)	29 (4.9)	208 (35.4)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지사·지점·분점은 회계장부 작성여부를 조사하지 않음(7개 사업체)

## (2) 결산법인의 재정상태

▪농업 법인당 자산은 14억 7천만원, 농업법인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88.2%

□ 농업 법인당 자산 14억 7천만원, 부채 9억 6천만원, 자본 5억 천만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자산 8.8%, 부채 9.0%, 자본 8.3% 각각 증가하였음

◦ 영농조합법인당 자산은 12억 9천만원이며, 농업회사법인당 자산은 26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음

◦ 농업법인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88.2%로 전년에 비해 1.2%p 증가하였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법인당 자본(백만원)	287	325	358	359	427	471	510
법인당 부채(백만원)	821	822	819	839	841	881	960
자본대비 부채비율(%)	286.1	252.9	228.8	233.7	197.0	187.0	188.2

《표 21》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p)

		결산 법인수	자산			부채			자본	자본대비 부채비율 <sup>1)</sup>
			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계	2005	2,180	1,352 (100.0)	558 (41.3)	794 (58.7)	881 (65.2)	477 (35.3)	404 (29.9)	471 (34.8)	187.0
	2006	2,381	1,471 (100.0)	609 (41.4)	862 (58.6)	960 (65.3)	547 (37.2)	413 (28.1)	510 (34.7)	188.2
	증 감	201	119	51	68	79	70	9	39	1.2
	증감률	9.2	8.8	9.1	8.6	9.0	14.7	2.2	8.3	-
영농조합 법인	2005	1,905	1,214 (100.0)	502 (41.4)	712 (58.6)	793 (65.3)	409 (33.7)	384 (31.6)	422 (34.8)	187.9
	2006	2,058	1,290 (100.0)	538 (41.7)	752 (58.3)	840 (65.1)	451 (35.0)	390 (30.2)	450 (34.9)	186.7
농업회사 법인	2005	275	2,303 (100.0)	947 (41.1)	1,356 (58.9)	1,492 (64.8)	948 (41.2)	543 (23.6)	811 (35.2)	184.0
	2006	323	2,623 (100.0)	1,059 (40.4)	1,563 (59.6)	1,725 (65.8)	1,164 (44.4)	561 (21.4)	898 (34.2)	192.1

주 1) 자본 대비 부채비율 = (부채/자본) \* 100

- 자산 규모별로는 『10억이상』 34.4%, 『1억~5억원』 33.9%, 『5억~10억』 18.5% 순으로 나타났음
- 부채 규모별로는 『1억미만』 32.2%, 『1억~5억』 29.7%, 『10억이상』 23.8% 순으로 나타났음
- 자본 규모별로는 『1억~5억』 40.9%, 『1억미만』 32.8%, 『5억~10억』 14.5%, 『10억이상』 11.8% 순으로 나타났음

《표 22》 자산, 부채, 자본금 규모별 사업체

(단위 : 개, %)

	결산 법인수	자산				부채				자본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계	2005	2,180 (100.0)	291 (13.3)	742 (34.0)	438 (20.1)	709 (32.5)	701 (32.2)	655 (30.0)	328 (15.0)	496 (22.8)	750 (34.4)	884 (40.6)	295 (13.5)	251 (11.5)
	2006	2,381 (100.0)	314 (13.2)	808 (33.9)	440 (18.5)	819 (34.4)	767 (32.2)	708 (29.7)	339 (14.2)	567 (23.8)	781 (32.8)	973 (40.9)	346 (14.5)	281 (11.8)
	증 감	201	23	66	2	110	66	53	11	71	36	89	51	30
	증감률	9.2	7.9	8.9	0.5	15.5	9.4	8.1	3.4	14.3	4.8	10.1	17.3	12.0
영농조합 법 인	2005	1,905 (87.4)	253 (11.6)	653 (30.0)	397 (18.2)	602 (27.6)	619 (28.4)	584 (26.8)	294 (13.5)	408 (18.7)	644 (29.5)	789 (36.2)	272 (12.5)	200 (9.2)
	2006	2,058 (86.4)	261 (11.0)	716 (20.1)	402 (16.9)	679 (28.5)	671 (28.2)	632 (26.5)	301 (12.6)	454 (19.1)	659 (27.7)	870 (36.5)	302 (12.7)	227 (9.5)
농업회사 법 인	2005	275 (12.6)	38 (1.7)	89 (4.1)	41 (1.9)	107 (4.9)	82 (3.8)	71 (3.3)	34 (1.6)	88 (4.0)	106 (4.9)	95 (4.4)	23 (1.1)	51 (2.3)
	2006	323 (13.6)	53 (2.2)	92 (3.9)	38 (1.6)	140 (5.8)	96 (4.1)	76 (3.2)	38 (1.6)	113 (4.7)	122 (5.1)	103 (4.3)	45 (1.9)	53 (2.2)

### (3) 결산법인의 경영수지

■ 농업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16억 8천만원, 당기 순이익은 4천 8백만원

□ 농업 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16억 8천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음

◦ 결산법인 중 결손법인은 626개로 26.3%이며, 전년에 비해 9.2% 증가하였음

◦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26.8원, 당기순이익은 28.6원의 이익을 남겼음

※ 2006년 제조업 영업이익 1,000원당 54.7원(산업은행 : 2006년 기업재무분석)

《표 23》 법인당 경영수지

(단위 : 개, 백만원, %)

		결산법인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결손 제외
			결손							
계	2005	2,180 (100.0)	573 (26.3)	1,709	1,485	223	42	50	48	87
	2006	2,381 (100.0)	626 (26.3)	1,680	1,438	242	45	51	48	89
	증 감	201	53	-29	-47	19	3	1	-	2
	증감률	9.2	9.2	-1.7	-3.2	8.5	7.1	2.0	-	2.3
영농조합 법인	2005	1,905 (100.0)	487 (25.6)	1,527	1,329	197	34	41	41	72
	2006	2,058 (100.0)	517 (25.1)	1,512	1,294	219	40	45	45	77
농업회사 법인	2005	275 (100.0)	86 (31.3)	2,971	2,567	403	102	110	102	203
	2006	323 (100.0)	109 (33.7)	2,750	2,356	394	81	86	67	178

###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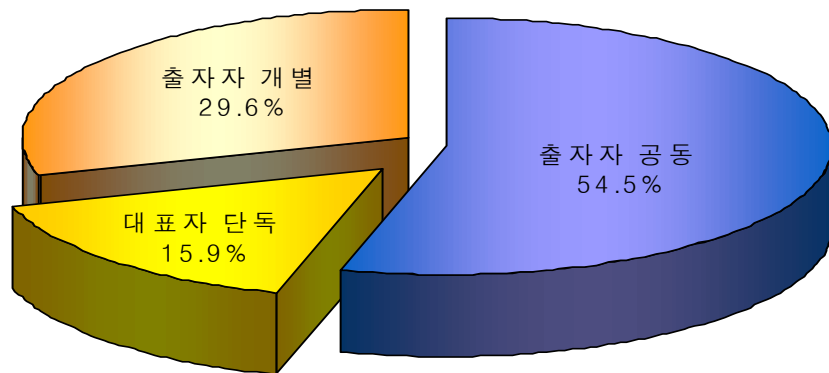
#### 가. 사업체수

■ 어업법인 사업체는 483개로 전년에 비해 2.2% 감소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사업체는 483개로 전년에 비해 2.2% 감소하였음

□ 운영주체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출자자 개별운영은 5.9% 증가한 반면, 대표자 단독운영 및 출자자 공동운영은 각각 14.4%, 2.2% 감소하였음

【그림 10】 운영주체별 사업체 구성비



《표 24》 운영주체별 사업체

(단위 : 개, %)

	운영 중인 사업체 계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개별운영 <sup>1)</sup>
2005	494 (100.0)	269 (54.5)	90 (18.2)	135 (27.3)
2006	483 (100.0)	263 (54.5)	77 (15.9)	143 (29.6)
증 감	-11	-6	-13	8
증감률	-2.2	-2.2	-14.4	5.9

주 1) 『출자자 개별운영』 사업체는 본 조사에서 조사표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나. 종사자수

■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2,442명으로 법인당 7.2명

□ 2006년 12월 1일 현재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2,442명이며, 전년에 비해 6.0% 증가하였음

- 임시 및 일일 종사자, 상근종사자는 각각 14.9%, 1.2% 증가하였음
- 법인당 종사자수는 7.2명으로 전년보다 0.8명 많게 나타났음

《표 25》 어업법인 사업체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사업체	종사자 합 계	상근종사자			임시및일일 종 사 자	법 인 당 종사자수
			계	출자자	고용		
2005	359	2,303 (100.0)	1,492 (64.8)	906 (39.3)	586 (25.4)	811 (35.2)	6.4 (0.3)
2006	340	2,442 (100.0)	1,510 (61.8)	915 (37.5)	595 (24.4)	932 (38.2)	7.2 (0.3)
증 감	-19	139	18	9	9	121	0.8
증감률	-5.3	6.0	1.2	1.0	1.5	14.9	12.5

□ 상근종사자 규모별 사업체를 보면, 『5인미만』 사업체는 65.0%, 『5~9인』 25.3%, 『10~49인』 9.4% 순으로 나타났음

- 상근종사자 규모가 『5인미만』 사업체가 절반 이상으로 조사되었음

《표 26》 상근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단위 : 개, %)

	사업체	5인미만	5~9인	10~49인	50인이상
2005	359 (100.0)	242 (67.4)	95 (26.5)	21 (5.8)	1 (0.3)
2006	340 (100.0)	221 (65.0)	86 (25.3)	32 (9.4)	1 (0.3)
증 감	-19	-21	-9	11	-
증감률	-5.3	-8.7	-9.5	52.4	-



## 다. 어업경영 현황

### (1) 양식장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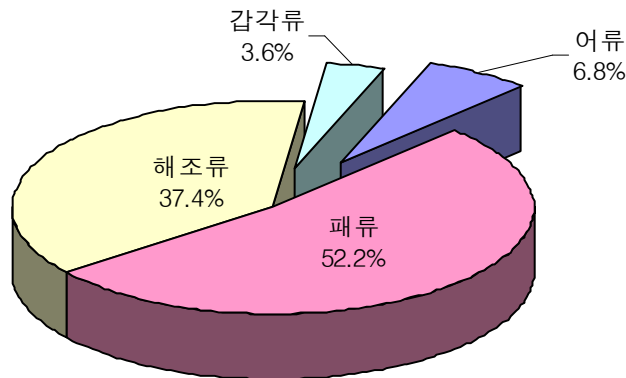
■ 양식장 보유 사업체 65.0%, 법인당 양식장 면적은 전년에 비해 10.3% 감소

□ 양식장 보유 사업체는 65.0%(221개)로 전년에 비해 13.3% 감소하였으며, 법인당 양식장 면적은 5.2ha로 전년에 비해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양식장 종류별로 보면, 패류가 52.2%, 해조류 37.4%, 어류 6.8%, 갑각류 3.6% 순으로 나타났음

	2003	2004	2005	2006
양식장 보유 사업체의 전년대비 증감률(%) :	252 (6.3)	262 (4.0)	255 (-2.7)	221 (-13.3)

【그림 11】 양식 품종별 면적 구성비



《표 27》 양식장 시설

(단위 : 개,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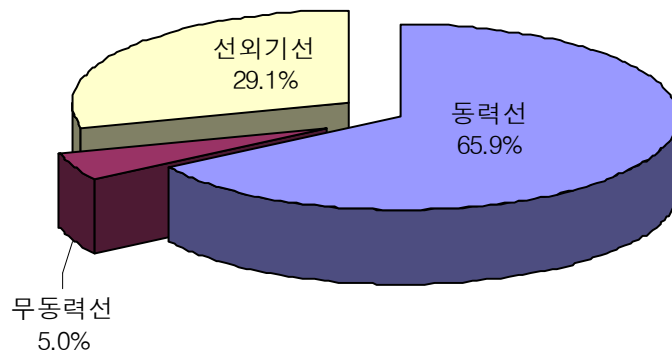
	사업체	양식장보유 사업체	양식 품종별 면적					법인당 면적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2005	359 (100.0)	255 (71.0)	1,468 (100.0)	106 (7.2)	819 (55.8)	499 (34.0)	44 (3.0)	5.8
2006	340 (100.0)	221 (65.0)	1,147 (100.0)	78 (6.8)	599 (52.2)	429 (37.4)	41 (3.6)	5.2
증 감	-19	-34	-321	-28	-220	-70	-3	-0.6
증감률	-5.3	-13.3	-21.9	-26.4	-26.9	-14.0	-6.8	-10.3

## (2) 보유어선 척수 및 톤수별 동력선수

■어선을 보유한 사업체는 31.5%, 보유어선 중 동력선이 65.9%

- 어업법인 중 어선보유 사업체는 31.5%(107개)이며 전년대비 15.1%, 보유어선은 258척으로 전년대비 23.9% 각각 감소하였음
  - 동력선은 170척으로 전년에 비해 24.1% 감소하였으며, 톤수별 동력선수는 『10톤미만』이 90.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법인당 보유어선은 2.4척임

【그림 12】 보유어선 척수별 구성비



《표 28》 보유어선 척수 및 톤수별 동력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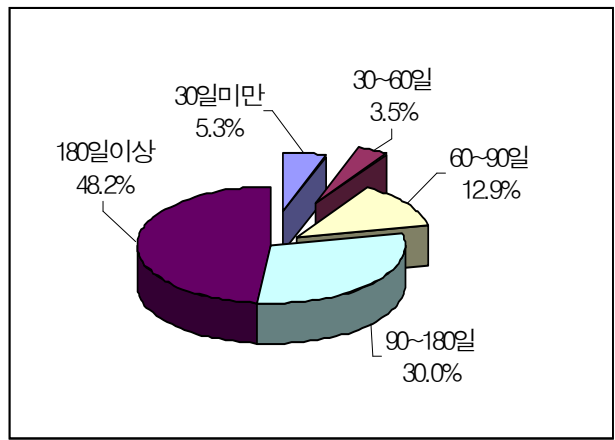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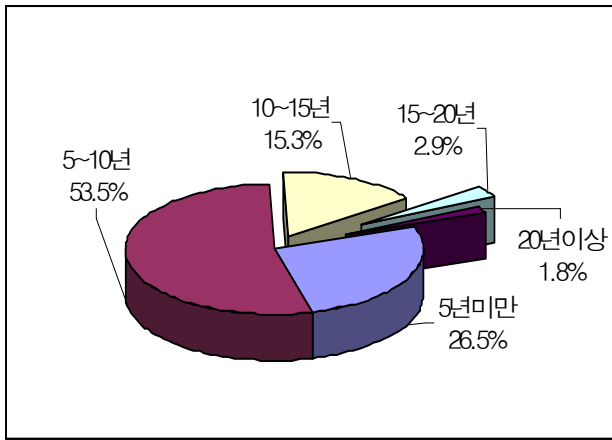
(단위 : 개, 척, %)

	사업체	어선보유 사업체	보유 어선수					톤수별 동력선수			
			계	동력선	무동 력선	선외 기선	계	10톤 미만	10~ 50톤	50~ 100톤	
											법인당
2005	359 (100.0)	126 (35.1)	339 (100.0)	2.7	224 (66.1)	23 (6.8)	92 (27.1)	224 (100.0)	212 (94.6)	10 (4.5)	2 (0.9)
2006	340 (100.0)	107 (31.5)	258 (100.0)	2.4	170 (65.9)	13 (5.0)	75 (29.1)	170 (100.0)	153 (90.0)	14 (8.2)	3 (1.8)
증 감	-19	-19	-81	-0.3	-54	-10	-17	-54	-59	4	1
증감률	-5.3	-15.1	-23.9	-11.1	-24.1	-43.5	-18.5	-24.1	-27.8	40.0	50.0

- 어업법인의 보유어선 중 선령별 동력어선은 『5~10년』 53.5%, 『5년미만』 26.5%, 『10~15년』 15.3% 순으로 나타났음
- 연간 출어일수는 『180일이상』 48.2%, 『90~180일』 30.0%, 『60~90일』 12.9%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3】 선령별 동력선수 구성비

【그림 14】 출어일수별 동력선수 구성비



《표 29》 선령별 및 출어일수별 동력선수

(단위 : 개, 척, %)

	사업체	동력선 보유 사업체	동력 선수	선령별 동력선수					출어일수별 동력선수				
				5년 미만	5~ 10년	10~ 15년	15~ 20년	20년 이상	30일 미만	30~ 60일	60~ 90일	90~ 180일	180일 이상
2005	359 (100.0)	97 (27.0)	224 (100.0)	69 (30.8)	109 (48.7)	40 (17.9)	3 (1.3)	3 (1.3)	13 (5.8)	14 (6.3)	58 (25.9)	48 (21.4)	91 (40.6)
2006	340 (100.0)	76 (22.4)	170 (100.0)	45 (26.5)	91 (53.5)	26 (15.3)	5 (2.9)	3 (1.8)	9 (5.3)	6 (3.5)	22 (12.9)	51 (30.0)	82 (48.2)
증 감	-19	-21	-54	-24	-18	-14	2	-	-4	-8	-36	3	-9
증감률	-5.3	-21.6	-24.1	-34.8	-16.5	-35.0	66.7	-	-30.8	-57.1	-62.1	6.3	-9.9

## 라.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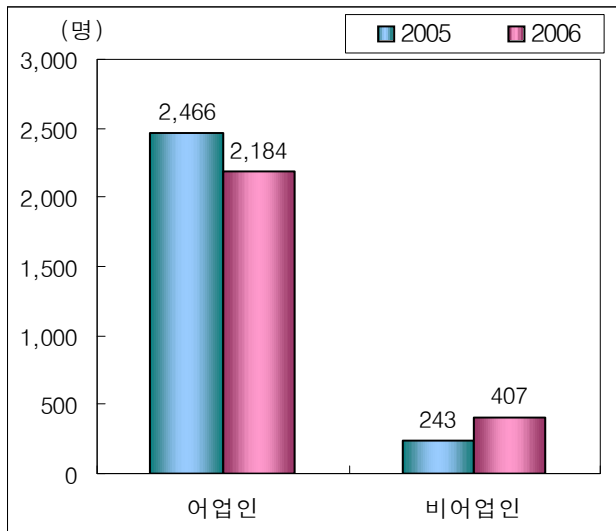
### (1) 출자자수 및 출자금

■ 어업 법인당 출자자수는 7.6명, 출자금은 1억 9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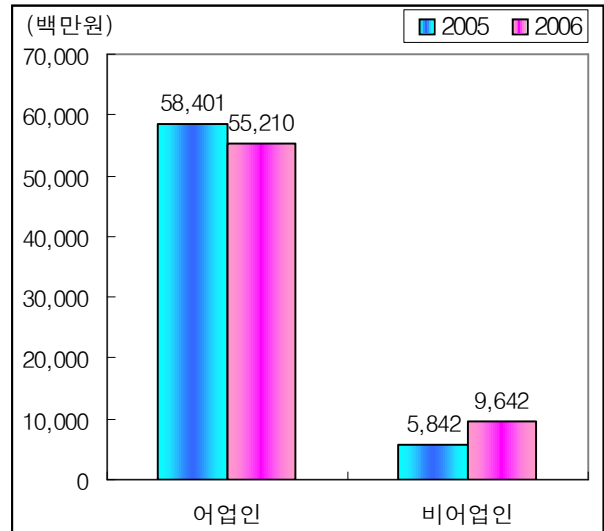
□ 어업법인의 출자자수는 2,591명으로 전년에 비해 4.4% 감소하였으나, 출자금은 648억 5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하였음

- 출자자중 어업인 11.4% 감소한 반면, 비어업인 67.5% 증가하였고, 출자금은 어업인 5.5% 감소하였으나 비어업인 65.0% 증가하였음
- 법인당 출자자수는 7.6명이며, 법인당 출자금은 1억 9천만원임

【그림 15】 출자자수



【그림 16】 출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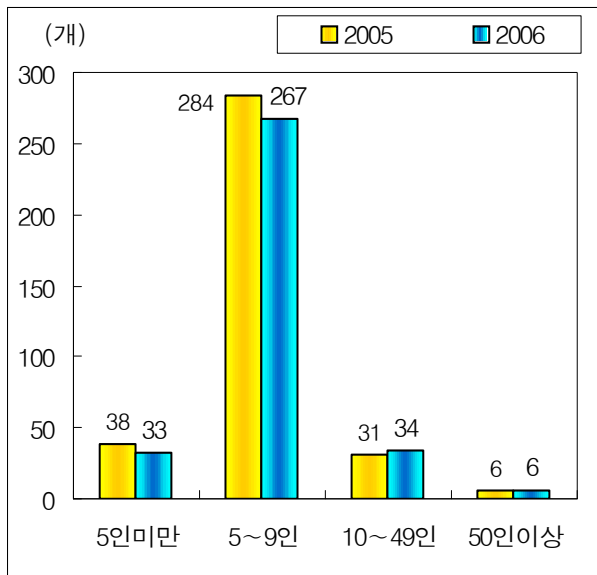
《표 30》 출자자수 및 출자금

(단위 : 개, 명,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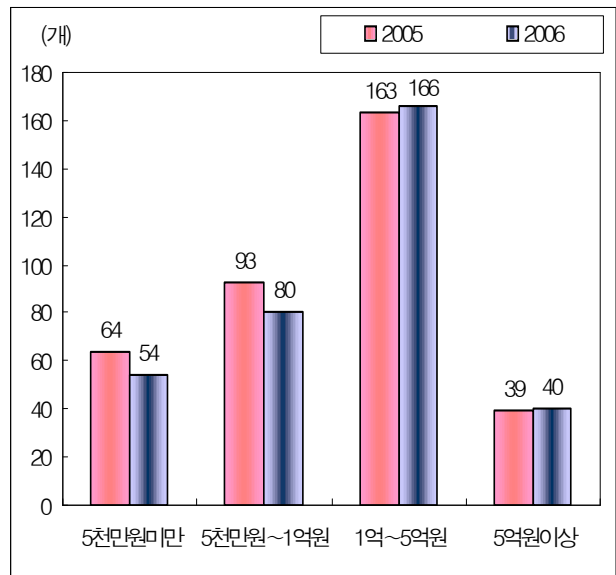
	사업체	출자자수				출자금			
		계	어업인	비어업인	법인당	계	어업인	비어업인	법인당
2005	359	2,709 (100.0)	2,466 (91.0)	243 (9.0)	7.5	64,243 (100.0)	58,401 (90.9)	5,842 (9.1)	178.9
2006	340	2,591 (100.0)	2,184 (84.3)	407 (15.7)	7.6	64,852 (100.0)	55,210 (85.1)	9,642 (14.9)	190.5
증 감	-19	-118	-282	164	0.1	609	-3,191	3,800	11.6
증감률	-5.3	-4.4	-11.4	67.5	1.3	0.9	-5.5	65.0	6.5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출자자수 규모별 사업체는 『5~9인』 78.5%, 『10~49인』 10.0%, 『5인미만』 9.7%, 『50인이상』 1.8%로 나타났음
  - 전년에 비해 출자자수가 『5인미만』 13.2%, 『5~9인』 6.0% 각각 감소한 반면, 『10~49인』 9.7% 증가하였고 『50인이상』 은 전년과 같음
- 출자금 규모별 사업체는 『1억~5억원』 48.8%, 『5천만원~1억원』 23.5%, 『5천만원미만』 15.9%, 『5억원이상』 11.8%로 나타났음
  - 전년에 비해 출자금이 『5천만원미만』 15.6%, 『5천만원~1억원』 14.0% 각각 감소한 반면, 『5억이상』 2.6%, 『1억~5억원』 1.8% 각각 증가하였음

【그림 17】 출자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그림 18】 출자금 규모별 사업체 분포



《표 31》 출자자수 및 출자금 규모별 사업체

(단위 : 개, %)

	출자 법인수	출자자수				출자금			
		5인 미만	5~ 9인	10~ 49인	50인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1억~ 5억원	5억원 이상
2005	359 (100.0)	38 (10.6)	284 (79.1)	31 (8.6)	6 (1.7)	64 (17.8)	93 (25.9)	163 (45.4)	39 (10.9)
2006	340 (100.0)	33 (9.7)	267 (78.5)	34 (10.0)	6 (1.8)	54 (15.9)	80 (23.5)	166 (48.8)	40 (11.8)
증 감	-19	-5	-17	3	-	-10	-13	3	1
증감률	-5.3	-13.2	-6.0	9.7	-	-15.6	-14.0	1.8	2.6

## (2) 정부지원금

■어업법인당 정부보조금은 1억 9천만원, 정부융자금은 2억 8천만원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부보조금을 받은 사업체는 111개로 전년에 비해 4.7%, 정부융자금을 받은 사업체는 122개로 전년에 비해 7.0% 각각 증가하였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법인당 정부보조금(백만원) :	152.0	129.7	138.0	167.8	186.5	171.5	191.2
전년대비 증감률(%)	(-)	(-14.7)	(6.4)	(21.6)	(11.1)	(-8.0)	(11.5)
법인당 정부융자금(백만원) :	192.0	223.8	239.0	258.7	266.8	247.0	275.9
전년대비 증감률(%)	(-)	(16.6)	(6.8)	(8.2)	(3.1)	(-7.4)	(11.7)

-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1억 9천만원, 정부융자금 잔액은 2억 8천만원 수준임
- 법인당 정부보조금은 전년에 비해 11.5%, 법인당 정부융자금 잔액은 11.7% 각각 증가하였음

《표 32》 정부 지원금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체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법인수	금액	법인당	법인수	금액	법인당
2005	359	106	18,176	171.5	114	28,160	247.0
2006	340	111	21,219	191.2	122	33,645	275.9
증 감	-19	5	3,043	19.7	8	5,485	28.9
증감률	-5.3	4.7	16.7	11.5	7.0	19.5	11.7

## 마. 수산물 판매(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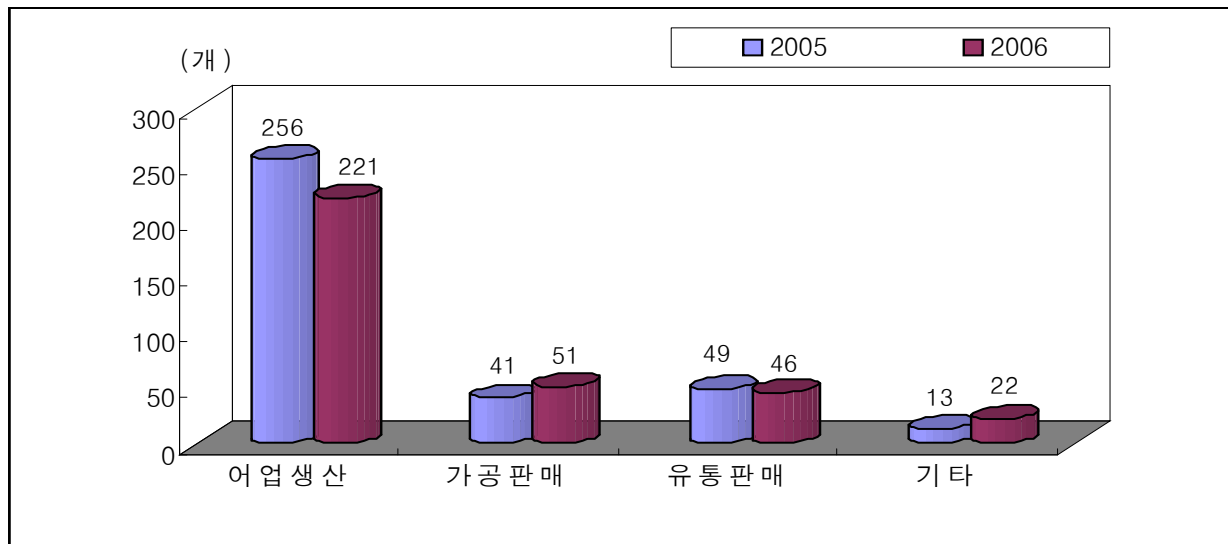
### (1) 수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수

■ 수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는 어업생산이 전년에 비해 13.7% 감소

□ 어업법인의 수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를 보면, 어업생산 65.0%, 가공판매 15.0%, 유통판매 13.5%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에 비해 어업생산 사업체는 13.7%, 유통판매 6.1% 각각 감소한 반면, 가공판매 24.4%, 기타 69.2% 증가하였음

【그림 19】 수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 분포



《표 33》 수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

(단위 : 개, %)

	계	어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기타
2005	359 (100.0)	256 (71.3)	41 (11.4)	49 (13.6)	13 (3.6)
2006	340 (100.0)	221 (65.0)	51 (15.0)	46 (13.5)	22 (6.5)
증 감	-19	-35	10	-3	9
증감률	-5.3	-13.7	24.4	-6.1	69.2

## (2) 수산물 판매(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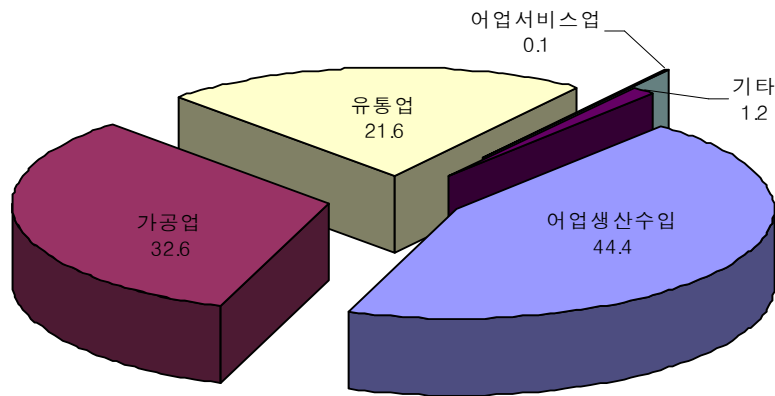
■ 어업 법인당 판매(수입)액은 5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

□ 어업법인의 지난 1년간 총 판매(수입)액은 1,91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1% 증가하였으며, 법인당 판매액은 5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함

□ 어업생산 수입은 44.4%로 전년에 비해 12.9% 증가한 반면, 어업생산이외 사업 수입 55.6%로 전년에 비해 2.9% 증가하였음

◦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중 가공업은 32.6%, 유통업은 21.6%임

【그림 20】 수산물 판매(수입)액 구성비



《표 34》 수산물 판매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체	판매액 계		어업 생산수입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법인당	계		소계	가공업	유통업	어업 서비스업	기타
2005	359	498.0	178,796 (100.0)	75,344 (42.1)	103,452 (57.9)	48,327 (27.0)	52,119 (29.1)	180 (0.1)	2,826 (1.6)
2006	340	563.3	191,530 (100.0)	85,082 (44.4)	106,448 (55.6)	62,503 (32.6)	41,450 (21.6)	239 (0.1)	2,256 (1.2)
증 감	-19	65.3	12,734	9,738	2,996	14,176	-10,669	59	-570
증감률	-5.3	13.1	7.1	12.9	2.9	29.3	-20.5	32.8	-20.2



## 바. 경영실태

### (1) 회계장부 작성여부 및 사무실 사용여부

■ 어업법인 사업체 중 결산서 작성 사업체는 224개로 65.9%

- 어업법인의 결산서 작성 사업체는 65.9%로 전년에 비해 9.8% 증가하였음
  - 결산서 미작성 및 간이기장 사업체는 전년에 비해 각각 32.1%, 17.6% 감소하였음
- 어업법인 중 사무실이 있는 사업체는 63.8%(217개)로 전년에 비해 2.4% 증가하였음
  - 전년과 비교하면 임차 22.9%, 법인소유 1.3% 각각 증가한 반면, 무상 19.2% 감소하였음

《표 35》 회계장부 작성 및 사무실 사용여부

(단위 : 개, %)

	사업체	결산서 작성여부			사무실 사용여부				
		결산서 작성	간이 기장	미작성	사무실 있는 사업체				사무실 없는 사업체
					계	법인 소유	임차	무상	
2005	359 (100.0)	204 (56.8)	74 (20.6)	81 (22.6)	212 (59.1)	151 (42.1)	35 (9.7)	26 (7.2)	147 (40.9)
2006	340 (100.0)	224 (65.9)	61 (17.9)	55 (16.2)	217 (63.8)	153 (45.0)	43 (12.6)	21 (6.2)	123 (36.2)
증 감	-19	20	-13	-26	5	2	8	-5	-24
증감률	-5.3	9.8	-17.6	-32.1	2.4	1.3	22.9	-19.2	-16.3

## (2) 결산법인의 재정상태

■ 어업법인당 자산은 9억 5천만원, 어업법인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65.5%

□ 어업 법인당 자산 9억 5천만원, 부채 6억 9천만원, 자본 2억 6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자산 10.5%, 부채 10.5%, 자본 10.1% 각각 증가하였음

◦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65.5%로 전년에 비해 0.9%p 증가하였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법인당 자산(백만원) :	417	468	463	583	593	627	693
법인당 부채(백만원) :	194	195	225	250	251	237	261
자본대비 부채비율(%) :	214.9	240.0	205.8	233.2	236.3	264.6	265.5

《표 36》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p)

	결산 법인수	자산			부채			자본	자본대비 부채비율 <sup>1)</sup>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2005	204 (56.8)	863 (100.0)	384 (44.5)	479 (55.5)	627 (72.7)	345 (40.0)	282 (32.7)	237 (27.5)	264.6
2006	224 (65.9)	954 (100.0)	449 (47.1)	505 (52.9)	693 (72.6)	412 (43.2)	281 (29.5)	261 (27.4)	265.5
증 감	20	91	65	26	66	67	-1	24	0.9
증감률	9.8	10.5	16.9	5.4	10.5	19.4	-0.4	10.1	-

주 1) 자본 대비 부채비율 = (부채/자본) \* 100

□ 어업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은 『1억~5억』 이 각각 35.8%, 38.7%, 55.4%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표 37》 자산, 부채, 자본규모별 사업체

(단위 : 개, %)

	결산 법인수	자산				부채				자본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2005	204 (100.0)	27 (13.2)	64 (31.4)	54 (26.5)	59 (28.9)	48 (23.5)	76 (37.3)	39 (19.1)	41 (20.1)	74 (36.3)	99 (48.5)	24 (11.8)	7 (3.4)
2006	224 (109.8)	30 (14.7)	73 (35.8)	53 (26.0)	68 (33.3)	61 (29.9)	79 (38.7)	39 (19.1)	45 (22.1)	71 (34.8)	113 (55.4)	26 (12.7)	14 (6.9)
증 감	20	3	9	-1	9	13	3	-	4	-3	14	2	7
증감률	9.8	11.1	14.1	-1.9	15.3	27.1	3.9	0.0	9.8	-4.1	14.1	8.3	100.0

### (3) 결산법인의 경영수지

■어업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7억 9천만원, 당기순이익은 1천 3백만원

□ 어업 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7억 9천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천 3백만원으로 나타났음

◦ 결산법인 중 결손법인은 52개로 23.2%이며, 전년에 비해 13.0% 증가하였음

◦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45.7원, 당기순이익은 16.5원의 이익을 남겼음

※ 2006년 제조업 영업이익 1,000원당 54.7원(산업은행 : 2006년 기업재무분석)

《표 38》 법인당 경영수지

(단위 : 개, 백만원, %)

	결산법인수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영업 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결손 제외
		결손							
2005	204 (100.0)	46 (22.5)	783	653	129	33	20	16	47
2006	224 (100.0)	52 (23.2)	787	654	133	36	14	13	41
증 감	20	6	4	1	4	3	-6	-3	-6
증감률	9.8	13.0	0.5	0.2	3.1	9.1	-30.0	-18.8	-12.8